www.kcc.go.kr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방송통신위원회

일 러 두 기

이 심결집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심결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2014~2023)의 연도별 심결통계자료를 포함하였습니다.

목 차

Ⅰ. 개 요

1 총 평 ····· 3

2 2023년도 금지행위 등에 관한 심의·의결 현황

1. 총론 ····· 5
2.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현황 ····· 7
3.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 8

3 2023년도 금지행위 등 관련 법령 정비 주요 내용 ····· 10

4 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10년간) 금지행위 시정조치 현황(2014년~2023년)

1. 연도별 심의·의결 현황 ····· 12
2. 연도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현황 ····· 18
3. 연도별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 21
4. 연도별 사업자별 금지행위 세부현황 ····· 24

Ⅱ. 조사사건 심의·의결서

1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4.11., 9.26.)

1. 개 요 ····· 47

2. 관련 사례 ····· 48

2 ㈜엘지유플러스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6.21.)

1. 개 요 ····· 92

2. 관련 사례 ····· 93

3 어도비(Adobe)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1.29.)

1. 개 요 ····· 109

2. 관련 사례 ····· 111

Ⅲ. 부 록

□ 방송·통신 금지행위 및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정

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143

2.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 151

3.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 ····· 162

4.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 164

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 ····· 168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 170

7.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 177

8.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 179

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184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187

11.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 196

12.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 198

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204

14.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211

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218

1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223

17.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 227

18.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 231

19.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 234

Ⅰ. 개 요

1 총 평

2 2023년도 금지행위 등에 관한 심의·의결 현황

3 2023년도 금지행위 관련 법령 정비 주요 내용

4 연도별(10년간) 금지행위 시정조치 현황 (2014년~2023년)

1. 총 평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은 국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미디어 콘텐츠, e커머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인프라로 자리 잡으며 업무·여가·소비 등 삶의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5G 네트워크의 보급으로 메타버스, 생성형 AI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과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상황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의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과 같은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신유형의 피해 대응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먼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등 유·무선통신, 부가통신시장에서 발생한 금지 행위 등에 대하여 58개 사업자*에 13억 9백만원의 과징금 및 1억 4,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1개의 사업자가 다른 건으로 제재받는 경우 중복하여 포함

아울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위원 수 증원과 직권조정결정 제도 도입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감경 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의 고시를 개정하였다.

1) 주요 시정조치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유·무선통신, 부가통신시장의 조사·단속 및 엄정 제재를 통하여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언론보도 등 위반사실 인지에 따른 사실조사와 국민신문고 등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개 관련 유통점에 대해 300만원~72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등 총 1억 4,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LGU+에 대하여 소속 대리점이 부가서비스 미가입을 이유로 '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불가' 및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했으며,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을 안내하는 경우 이용자가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가입절차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안내할 것을 권고하였다.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이용 계약 체결 시 위약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 제안·부과로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어도비(Adobe)사에 대하여 과징금 13억 9백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하였다.

2)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2 개정('23.1.3.)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증원, 직권조정결정 제도의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외에도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하였다.

2. 2023년도 금지행위 등에 관한 심의·의결 현황

1. 총 론

o 2023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관련 법령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한 조사사건 58건, 법령·고시 등 제·개정 3건 등으로 총 61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2-1-1. 심의·의결 현황 >

(단위 : 건)

조사 사건	통신 재정	법령.고시 등	합 계
58	-	3	61

< 2-1-2. 주요 심결 사례 >

구분	의결일	안 건 명	사업자	주요 시정조치
조사 사건	2023-04-11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30개 유통점	o 과태료 o 행위중지 o 시정명령공표 등
	2023-06-21	㈜엘지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	㈜엘지유플러스	o 업무처리절차개선 등
	2023-09-26	민원신고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6개 유통점	o 과태료 o 행위중지 o 시정명령공표 등
	2023-11-29	어도비(Adobe)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	어도비(Adobe)	o 과징금 o 행위중지 o 업무처리절차 개선 o 시정명령공표 등

< 2-1-3. 시정조치[1]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변경	행위중지	시정명령공표	절차개선	형사고발	기타[2]	합계
-	1	56	-	57	57	2	-	3	176

1) 동일 조사사건에 대하여 1개 사업자에 다수의 시정조치 포함

2) 기타 항목 :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2건), 시정권고(1건)

< 2-1-4. 과징금 부과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이용자 이익 저해			계
	중요사항 미고지	해지권 제한	기타	
건수	1*	1*	-	2
	*동일 사건 금지행위 중복 해당			
금액	433,000	876,000	-	1,309,000

< 2-1-5.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단말기유통법 위반	합 계
건 수	56	56
금 액	142,800	142,800

2.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현황

□ 개요

o 2023년도 조사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총 58건이 있었으며, 분야별로 무선 57건, 부가 1건이 있었다.

< 2-2-1. 조사사건 전체 현황 >

구분	역무	사건 유형	사업자	위반 유형	위반내용
무선	이동전화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지급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유통점 (30개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	o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
			유통점 (26개사)		
		전기통신사업법관련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	㈜엘지유플러스	이용자 이익 저해	o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업무처리절차
부가	부가통신	서비스 가입 및 해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어도비 (Adobe)	이용자 이익 저해	o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 제안·부과 등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o 이용계약 체결시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소계		**3**	**58개사**	-	-

< 2-2-2. 금지행위 위반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사업자	이용자 이익 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계
무 선 분 야	LGU+	1	-	1
	기타 (유통점 등)	-	56	56
	소 계	**1**	**56**	**57**
부 가 통 신 분 야	어도비 (Adobe)	1	-	1
	소 계	**1**	**-**	**1**
총 계		**2**	**56**	**58**

3.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 개 요

o 시정조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지행위의 중지, 절차개선, 시정명령 공표 및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를 명령하였다.

-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해당 통신사에 절차 개선,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단말기 지원금 지급 관련으로 56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위중지, 시정명령 공표를 명령하였다.

< 2-3-1. 시정조치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구분	사업자	시정조치[1] 유형별							
		과징금	과태료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절차 개선	시정 권고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	계
무선 분야	LGU+	-	-	-	-	1	1	1	3
	유통점	-	56	56	56	-	-	-	168
	소 계	**-**	**56**	**56**	**56**	**1**	**1**	**1**	**171**
부가 통신 분야	어도비(Adobe)	1	-	1	1	1	-	1	5
	소 계	**1**	**-**	**1**	**1**	**1**	**-**	**1**	**5**
총 계		**1**	**56**	**57**	**57**	**2**	**1**	**2**	**176**

1) 1개 사업자가 동일 조사사건에서 다수의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을 포함

□ 과징금 부과 세부현황

o 조사사건에 대한 과징금 총 부과내역은 13억 9백만원이며, 이 중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8억 7,600만원, 이용계약 체결시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4억 3,300만원을 부과하였다.

< 2-3-2. 과징금 부과 세부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자	이용자 이익 저해		합 계
		해지권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부 가 통 신	어도비 (Adobe)	876,000	433,000	1,309,000
총 계		**876,000**	**433,000**	**1,309,000**

□ 과태료 부과 현황

o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총 1억 4,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2-3-3. 과태료 부과 세부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자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합계
무 선 통 신	이동통신 유통점 (56개)	142,800	142,800
총 계		**142,800**	**142,800**

3. 2023년도 금지행위 등 관련 법령 정비 주요 내용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2023. 4. 21.)

o 단발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

o **(1호, 조사협력)** 수범자의 보다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사 협력'의 의미를 '사실 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상한을 적용받도록 함

o **(5호, 자율준수)** 이통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경 상한도 차등적으로 설정함

o **(6호, 재발방지)** 재발방지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단말기 유통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조치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적용받도록 함

2.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3. 7. 4.)

o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증원, 직권조정결정 제도 도입 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

o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함

o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 규정)** 분쟁조정위원회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위원회(6명 이내) 구성·운영 근거, 소위원회 결정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함

o **(수당과 여비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o **(규칙)**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판단기준(고시) 개정(2023. 12. 14.)

o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무이나,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제기본법을 조문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4. 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10년간) 금지행위 등 시정조치 현황 (2014 ~ 2023년)

1. 연도별 심의 · 의결 현황

o 지난 10년간 총 1,188건을 심의 · 의결 하였으며, 이 중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 조사사건은 1,085건(91.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법령·고시 등의 제·개정 77건(6.5%), 통신재정 28건(2.4%) 순이다.

< 4-1-1. 연도별 심의 · 의결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조사 사건	통신 재정	법령·고시 등	계
2014년	43	1	9	53
2015년	142	6	15	163
2016년	210	-	16	226
2017년	59	7	6	72
2018년	258	9	1	268
2019년	49	5	3	57
2020년	159	-	8	167
2021년	52	-	9	61
2022년	55	-	7	60
2023년	58	-	3	61
합 계	**1,085**	**28**	**77**	**1,188**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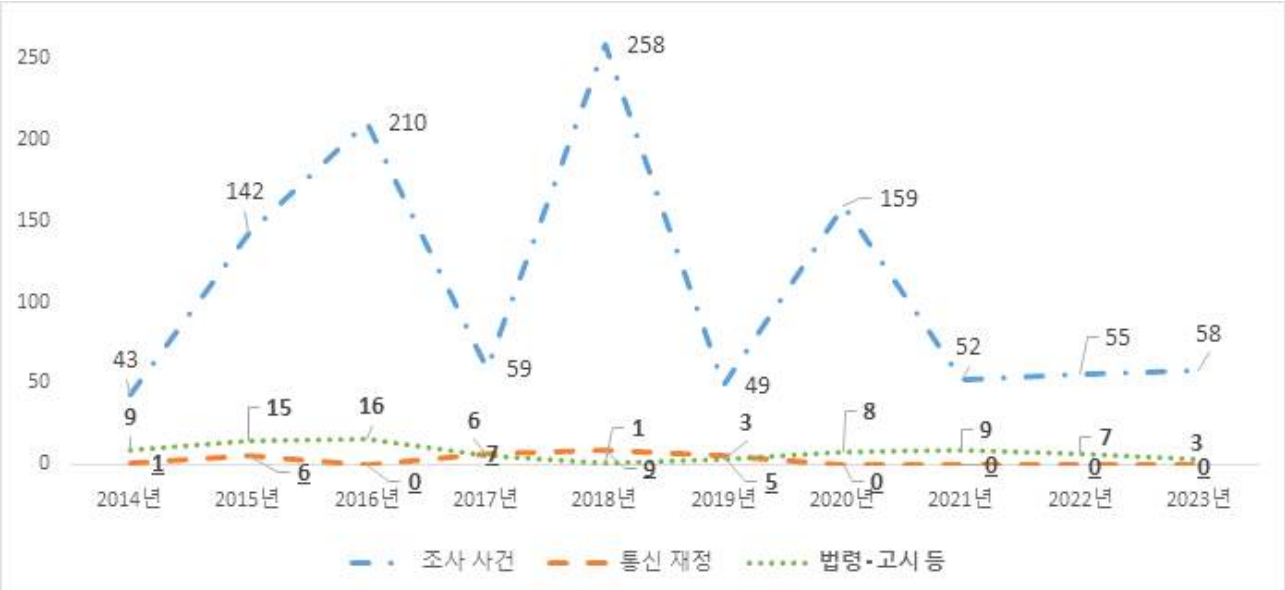

< 4-1-2. 연도별 금지행위 등 조사사건 심결내용 >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2014	이용자 이익 침해	차별적지원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3.13.)	SKT, KT, LGU+
		차별적지원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8.21.)	SKT, KT, LGU+
		결제취소 기간 불고지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웹하드사업자(6개)
		이용자의 결제 해지 제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티비이엔엠, ㈜이지원 인터넷서비스
		서비스 허위 과장 및 이용자의 결제 해지 제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비엔씨피㈜
		이용계약체결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네오피플
	수익배분 제한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SO
	중지명령 불이행	차별적지원금 지급관련 중지명령 불이행(2.14.)	SKT, KT, LGU+
	단말기 유통법 위반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행위(11.27.)	SKT, KT, LGU+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행위(12.4.)	SKT, KT, LGU+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행위(12.4.)	이동통신사 유통점 22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행위(12.19.)	이동통신사 판매점 13개
2015	이용자 이익 침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SKT, KT, LGU+, SK텔링크㈜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5.28.)	이동통신사 3사 ㈜씨제이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씨엠비 대전방송 등 8개 SO
		에스케이텔링크㈜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SK텔링크㈜
		(주)LG유플러스의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LGU+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LGU+, 다단계 유통점 7개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10.)	이동통신사 3사 ㈜씨엠비대전방송 등 6개 SO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씨엔앰 경기동부 등 6개 SO
	단말기 유통법 위반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이동통신 유통점 28개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SKT, 이동통신유통점 6개, 개인 3명
		판매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이동통신판매점 21개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엘비휴넷, LGU+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이동통신사 3사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MBN 미디어랩
	수익배분 지연	방송법상 적정한 수익배분 지연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하나방송주식회사 등 3개 SO
	이용약관 위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KT스카이라이프
2016	이용자 이익 침해	이용약관 절차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2.4)	알뜰폰사업자 19개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12.6.)	SKT 등 7개사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등 이용약관 절차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12.26.)	카카오 등 2개사
	이용약관 위반	이용약관 외 할인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2.4.)	KT
		중요사항 미고지 등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 법령상 금지행위 위반행위(12.21.)	SO 14개사 및 IPTV 3개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 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3.10.)	이동통신유통점 100개사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방해한 행위(7.8.)	LGU+ 임직원 3인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조사 거부·방해, 관리 감독 소홀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9.7.)	LGU+ 유통점 59개사
	기 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관련 위법행위(5.26.)	웹하드사업자 3개사
2017	이용자 이익 침해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12.6.)	SKT, SKB, KT, LGU+
	단말기 유통법 위반	외국인영업과 관련하여 이통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여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행위(3.21.)	SKT, KT, LGU+
		외국인영업과 관련하여 공시지원급 보다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중 일부에게는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3.21.)	이동통신 유통점 42개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3.21.)	이동통신 유통점 1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사전승낙제 위반행위(3.21.)	이동통신 유통점 1개
	비용의 부당전가	TV홈쇼핑사가 남품업자에게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시킨 행위 등(9.14.)	㈜지에스홈쇼핑 등 TV홈쇼핑 7개사
	기타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등 중요사항을 이용약관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3.21.)	KT
2018	이용자 이익침해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12.)	KT 등 20개사
			KT, LGU+, SKB, 밴사업자 등 17개사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3.21.)	페이스북
	단말기 유통법 위반	이통3사 법인 영업 및 대형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4.)	SKT, KT, LGU+, 대형유통점 1개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4.)	SKT, KT, LGU+, 유통점(171개사)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10.25.)	56개 유통점
	이용약관 위반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방송채널 차단행위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31.)	㈜티브로드 ㈜티브로드 동대문 방송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25.)	위드디스크
2019	이용자 이익침해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6.26.)	SKT, SKB
	단말기 유통법 위반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3.20.)	SKT, KT, LGU+ 유통점(35개사)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건(7.9.)	SKT
	수익배분 제한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관한 건(10.23.)	㈜씨엠비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현대에이치씨엔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4.17.)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5개사)
2020	이용자 이익침해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의 수정의결에 관한 건(1.22.)	Google LLC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9.9.)	SKT, SKB, KT, LGU+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7.)	케이티파워텔(주)
		'플로팅광고'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1.24.)	인터넷신문사업자(21개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	이통3사및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7.8.)	SKT, KT, LGU+ 유통점(124개사)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거래조건 차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6.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9.)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4개사)
2021	이용자 이익저해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4.14.)	KT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 미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6.9.)	LGU+
		통신4사의 10기가(Giga) 인터넷서비스 속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7.21.)	SKT, SKB, KT, LGU+
		약관에도 없는 위약금 부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29.)	KT
	단말기 유통법 위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22.)	기타
		민원신고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22.)	SKT, KT, LGU+ 유통점(28개사)
		이통3사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29.)	SKT, KT, LGU 및 유통점(13개사)
2022	이용자 이익 저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6.15.)	전기통신사업자 7개사
	사업자간 공정경쟁 저해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딜라이브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6.29.)	㈜딜라이브,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시청자 정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2.23.)	EBS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부당유용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11.16.)	방송사업자 20개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8.26.)	유통점 10개사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27.)	유통점 14개사
2023	이용자 이익 저해	㈜엘지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6.21.)	LGU+
		어도비(Adobe)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11.29.)	어도비 (Adobe)
	단말기 유통법 위반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4.11.)	유통점 30개사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9.26.)	유통점 26개사

2. 연도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현황

□ 개 요

o 최근 10년간 조사사건에 대하여 금지행위 등 유형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1,118건 중에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및 부당한 차별지급 등 단말기 지원금에 관한 위반 행위가 874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78.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152건(13.6%)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이용약관 위반행위가 28건(2.5%), 시청자 정보 부당유용 21건(1.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사항으로는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위반 등 40건(3.6%)이 있었다.

< 4-2-1. 연도별 금지행위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연 도	이용약관	이용자 이익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시청자 정보 부당유용	기 타	계
2014년	-	16	39	3	-	7[1)]	65
2015년	1	44	100	-	-	4[1)3)]	149
2016년	18	28	165	-	-	3[4)]	214
2017년	-	4	47	-	-	8[5)6)]	59
2018년	2	21	234	-	-	1[4)]	258
2019년	-	2	39	-	-	8[1)4)6)]	49
2020년	1	26	127	-	-	5[4)7)]	159
2021년	6	2	43	-	-	1[8)]	52
2022년	-	7	24	-	21	3[9)]	55
2023년	-	2	56	-	-	-	58
합 계	**28(2.5%)**	**152(13.6%)**	**874(78.2%)**	**3(0.3%)**	**21(1.9%)**	**40(3.6%)**	**1,118**

1)수익배분 제한, 2)협정위반, 3)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4)기술적 조치 의무 불이행, 5)비용의 부당전가, 6)권고사항, 7)거래조건 차별, 8)조사 거부·방해, 9)사업자간 공정경쟁 저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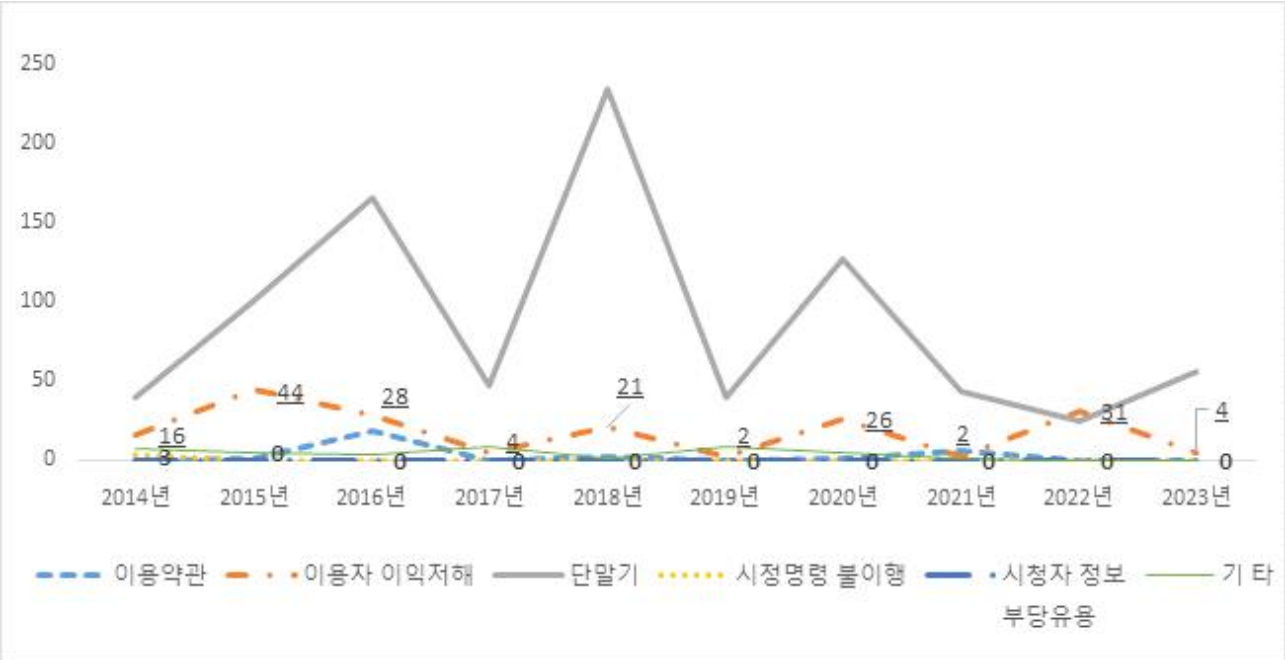

< 4-2-2.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세부 유형 >

(단위 : 건)

구 분	연 도										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요금 등 부당한 차별	6	8	7	-	-	-	-	-	7	-	28 (18.3%)
중요사항 미고지	6	7	21	-	20	-	-	1	-	1	56 (36.6%)
가입의사 미확인	1	-	-	-	-	-	-	-	-	-	1 (0.7%)
이용계약 해지 거부·제한	3	-	-	4	-	2	-	-	-	1	10 (6.5%)
선택권 제한 (가입 제한 등)	-	1	-	-	-	-	1	-	-	-	2 (1.3%)
허위·과장 광고	-	22	-	-	-	-	4	-	-	-	26 (17.0%)
기 타	-	6[2)]	-	-	1[3)]	-	21[4)]	1[5)]	-	1[6)]	30 (19.6%)
합 계	**16**	**44**	**28**	**4**	**21**	**2**	**26**	**2**	**7**	**3**	**177**

1) 약관 설명서 미교부, 2) 명의 도용, 3) 접속경로 변경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4) 광고 삭제 제한, 5) 개통 지연·제한, 6) 업무처리 절차 관련

※ 위의 수치는 1개 사업자가 동일 조사사건에서 다수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을 포함함

3. 연도별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 개 요

o 조사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총 3,667건의 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 행위중지 명령이 997건(2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867건(23.6%), 과태료 부과 858건(23.4%), 절차개선 216건(5.9%), 과징금 부과 193건(5.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약관변경, 영업정지, 형사고발은 각각 32건(0.9%), 7건(0.2%), 3건(0.1%)으로 나타났으며,

- 기타 조치로는 협정체결, 원상회복, 성실한 협상의무 명령,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보고, 개선 권고, 기술적 조치 등이 있으며, 이는 총 494건으로 13.5%를 차지하였다.

< 4-3-1. 연도별 시정조치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연 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변경	행위중지	시정명령공표	절차개선	형사고발	기타[1)]	계
2014년	5	21	36	7	55	-	17	3	143	287
2015년	1	43	97	1	131	-	53	-	131	457
2016년	1	46	163	20	200	200	46	-	80	756
2017년	-	5	45	4	57	57	11	-	15	194
2018년	-	29	229	-	256	257	24	-	30	825
2019년	-	6	38	-	39	41	4	-	15	143
2020년	-	10	128	-	133	155	28	-	36	490
2021년	-	7	42	-	44	51	7	-	11	162
2022년	-	25	24	-	24	49	25	-	31	178
2023년	-	1	56	-	57	57	2	-	3	176
합 계	**7 (0.2%)**	**193 (5.3%)**	**858 (23.4%)**	**32 (0.9%)**	**997 (27.2%)**	**867 (23.6%)**	**216 (5.9%)**	**3 (0.1%)**	**494 (13.5%)**	**3,667**

※ 위의 수치는 1개 사업자가 동일 조사사건에서 다수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함

1) 협정체결, 원상회복, 성실한 협상의무 명령,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보고, 개선 권고, 기술적 조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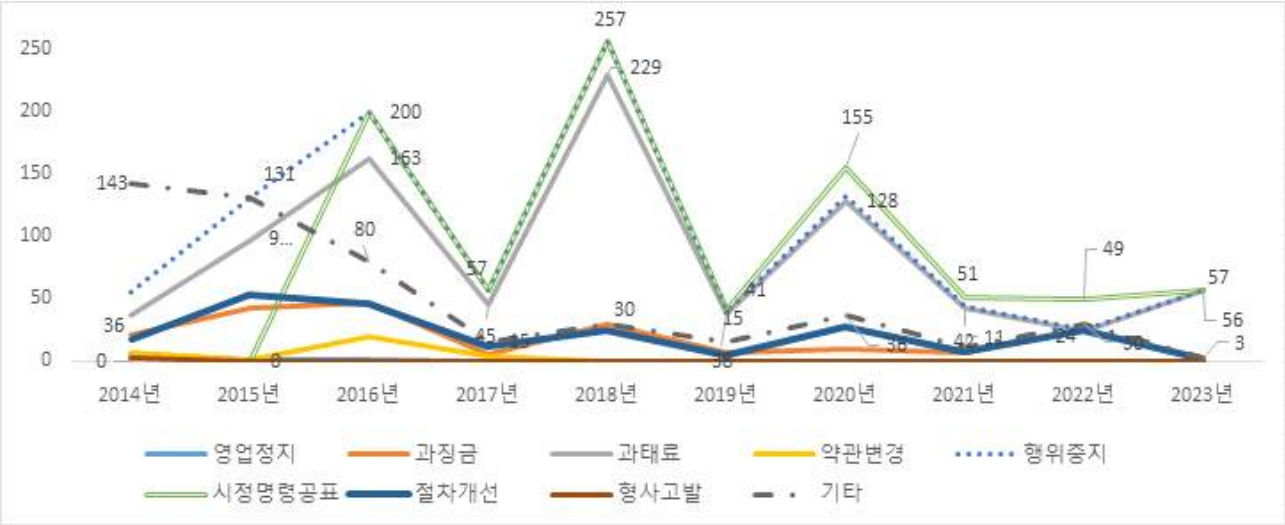

□ 연도별 과징금 부과 세부현황

o 지난 10년간 총 187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약 2,380억 6,26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금지행위 유형별로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총 115건에 1,531억 8,241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6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단말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지급 등 위반은 총 43건에 806억 6,58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33.9%를 차지하였다.

< 4-3-2. 연도별 과징금 부과 세부현황 >

(단위 : 건, 천원)

연 도	구분	이용약관 위 반	이용자 이익 저해	단말기 지원금	기 타[1]	계
2014년	건수	-	11	3	7	21
	금액	-	88,279,860	2,400,000	200,430	90,880,290
2015년	건수	1	35	3	4	43
	금액	137,000	36,675,860	3,402,000	466,420	40,681,280
2016년	건수	17	28	1	-	46
	금액	2,031,800	11,875,400	1,820,000	-	15,727,200
2017년	건수	-	2	3	-	5
	금액	-	904,000	2,124,000	-	3,028,000
2018년	건수	2	21	6	-	29
	금액	158,263	755,600	50,639,000	-	51,552,863

연 도	구분	이용약관 위 반	이용자 이익 저해	단말기 지원금	기 타[1]	계
2019년	건수	-	2	3	1	6
	금액	-	396,000	2,851,000	96,500	3,343,500
2020년	건수	1	5	3	1	10
	금액	390,500	1,737,000	51,200,000	30,000	53,357,500
2021년	건수	2	2	3	-	10
	금액	1,124,000	2,421,990	3,790,000	-	7,335,990
2022년	건수	-	7	-	18[2]	25
	금액	-	10,564,700	-	139,800	10,704,500
2023년	건수	-	2	-	-	2
	금액	-	1,309,000	-	-	1,309,000
합 계	**건수**	**23**	**115**	**43**	**13**	**187**
	금액	**3,451,063** (1.4%)	**153,182,410** (64.3%)	**80,665,800** (33.9%)	**763,350** (0.3%)	**238,062,623**

1) 기타 : 수익배분 제한, 거래조건 차별, 2) 시청자 정보 부당유용, 사업자간 공정경쟁 저해

□ 연도별 과태료 부과 세부현황

o 2014. 10. 1.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태료 부과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단말기유통법 위반 및 기술적 조치 미이행 등 총 858건에 대하여 17억 7,87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4-3-3. 연도별 과태료 부과 세부현황 >

(단위 : 건, 천원)

연 도	건수	금액
2014년	36	59,500
2015년	97	189,500
2016년	163	292,700
2017년	45	60,000
2018년	229	300,570
2019년	38	126,400
2020년	128	300,400
2021년	42	219,300
2022년	24	87,600
2023년	56	142,800
합 계	858	1,778,770

4. 연도별 사업자별 세부현황

- **(유선 분야)** SO사업자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KT, SKB, SKT·LGU+ 순으로 금지행위 위반이 있었으며,
- **(무선 분야)** '14.10.1.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이후 858개 유통점의 위반행위가 있었고, LGU+가 18건, SKT와 KT에서 각각 14건 건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 **(부가 통신 분야)** 어도비(Adobe)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48건 있었으며,
- **(방송 분야)** SO사업자 52건, TV홈쇼핑사업자 7건, IPTV사업자 3건, 미디어렙사업자 2건, 지상파방송사 1건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었다.

< 4-4-1. 사업자별 금지행위 전체현황 >

(단위 : 건)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
		이용약관 위 반	이용자 이익 침해	협정위반	기 타[1]			
유선 분야	SKT	1	7	-	-	-	-	8
	KT	2	9	-	-	-	-	11
	SKB	1	8	-	-	-	-	9
	LGU+	1	7	-	-	-	-	8
	SO사업자	-	26	-	-	-	-	26
	기타	2	18	-	-	-	-	20
	소 계	**7**	**75**	**-**	**-**	**-**	**-**	**82**
무선 분야	SKT	-	3	-		1	10	14
	KT	-	4	-	1	1	8	14
	LGU+	1	7	-		1	9	18
	유통점	1	10	-	1	-	846	858
	알뜰폰사업자	-	19	-	-	-	-	19
	기타	-	-	-	-	-	1	1
	소 계	**2**	**43**	**-**	**2**	**3**	**874**	**924**
부가통신 분야	부가통신사업자	-	25	-	-	-	-	25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	10	-	13	-	-	23
	소 계	**-**	**35**	**-**	**13**	**-**	**-**	**48**
방송 분야	지상파	-	-	-	1	-	-	1
	SO	16	-	-	36	-	-	52
	IPTV	3	-	-	-	-	-	3
	TV홈쇼핑	-	-	-	7	-	-	7
	미디어렙	-	-	-	2	-	-	2
	소계	**19**	**-**	**-**	**46**	**-**	**-**	**65**
합 계		**28**	**153**	**-**	**61**	**3**	**874**	**1,119**

1) 기타 : 수익배분 제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비용의 부당전가, 통신품질관련 정보의 명확한 고지 등 개선 권고, 거래조건 차별,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 공정경쟁 저해 등

□ 사업자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현황

< 4-4-2. 연도별 사업자별 금지행위 유형 세부현황 >

(단위 : 건)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저해	협정 위반	기타[1]			
2014년	무선분야	SKT	-	2	-	-	1	1	4
		KT	-	2	-	-	1	1	4
		LGU+	-	2	-	-	1	1	4
		유통점	-	-	-	-	-	36	36
		소 계	**-**	**6**	**-**	**-**	**3**	**39**	**48**
	부가통신분야	특수유형부가통신	-	10	-	-	-	-	10
		소 계	**-**	**10**	**-**	**-**	**-**	**-**	**10**
	방송분야	SO	-	-	-	7	-	-	7
		소 계	**-**	**-**	**-**	**7**	**-**	**-**	**7**
	합 계		**-**	**16**	**-**	**7**	**3**	**39**	**65**
2015년	유선분야	SKT	-	2	-	-	-	-	2
		KT	-	2	-	-	-	-	2
		SKB	-	2	-	-	-	-	2
		LGU+	-	2	-	-	-	-	2
		SO	-	20	-	-	-	-	20
		기타	1	-	-	-	-	-	1
		소 계	**1**	**28**	**-**	**-**	**-**	**-**	**29**
	무선분야	SKT	-	1	-	-	-	2	3
		KT	-	1	-	-	-	1	2
		LGU+	-	4	-	-	-	-	4
		유통점	-	10	-	-	-	97	107
		소 계	**-**	**16**	**-**	**-**	**-**	**100**	**116**
	방송분야	SO	-	-	-	3	-	-	3
		미디어렙	-	-	-	1	-	-	1
		소 계	**-**	**-**	**-**	**4**	**-**	**-**	**4**
	합 계		**1**	**44**	**-**	**4**	**-**	**100**	**149**
2016년	유선분야	SKT	-	1	-	-	-	-	1
		KT	1	1	-	-	-	-	2
		SKB	-	1	-	-	-	-	1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저해	협정 위반	기타[1]			
		LGU+	-	1	-	-	-	-	1
		SO	-	3	-	-	-	-	3
		소 계	**1**	**7**	**-**	**-**	**-**	**-**	**8**
	무선 분야	LGU+	-	-	-	-	-	2	2
		유통점	-	-	-	-	-	163	163
		알뜰폰사업자	-	19	-	-	-	-	19
		소 계	**-**	**19**	**-**	**-**	**-**	**165**	**184**
	부가통신 분야	부가통신	-	2	-	-	-	-	2
		특수유형 부가통신	-	-	-	3	-	-	3
		소 계	**-**	**2**	**-**	**3**	**-**	**-**	**5**
	방송 분야	IPTV	3	-	-	-	-	-	3
		SO	14	-	-	-	-	-	14
		소 계	**17**	**-**	**-**	**-**	**-**	**-**	**17**
	합 계		**18**	**28**	**-**	**3**	**-**	**165**	**214**
2017년	유선 분야	SKT	-	1	-	-	-	-	1
		KT	-	1	-	-	-	-	1
		SKB	-	1	-	-	-	-	1
		LGU+	-	1	-	-	-	-	1
		소 계	**-**	**4**	**-**	**-**	**-**	**-**	**4**
	무선 분야	SKT	-	-	-	-	-	1	1
		KT	-	-	-	1	-	1	2
		LGU+	-	-	-	-	-	1	1
		유통점	-	-	-	-	-	44	44
		소 계	**-**	**-**	**-**	**1**	**-**	**47**	**48**
	방송 분야	TV홈쇼핑	-	-	-	7	-	-	7
		소 계	**-**	**-**	**-**	**7**	**-**	**-**	**7**
	합 계		**-**	**4**	**-**	**8**	**-**	**47**	**59**
2018년	유선 분야	KT	-	1	-	-	-	-	1
		SKB	-	1	-	-	-	-	1
		LGU+	-	1	-	-	-	-	1
		기타	-	18	-	-	-	-	18
		소 계	**-**	**21**	**-**	**-**	**-**	**-**	**21**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저해	협정 위반	기타[1]			
	무 선 분 야	SKT	-	-	-	-	-	2	2
		KT	-	-	-	-	-	2	2
		LGU+	-	-	-	-	-	2	2
		유통점	-	-	-	-	-	228	228
		소 계	**-**	**-**	**-**	**-**	**-**	**234**	**234**
	부 가 통 신 분 야	특수유형 부가통신	-	-	-	1	-	-	1
		소 계	**-**	**-**	**-**	**1**	**-**	**-**	**1**
	방 송 분 야	SO	2	-	-	-	-	-	2
		소 계	**2**	**-**	**-**	**-**	**-**	**-**	**2**
	합 계		**2**	**21**	**-**	**1**	**-**	**234**	**258**
2019년	유 선 분 야	SKT	-	1	-	-	-	-	1
		SKB	-	1	-	-	-	-	1
		소 계	**-**	**2**	**-**	**-**	**-**	**-**	**2**
	무 선 분 야	SKT	-	-	-	-	-	2	2
		KT	-	-	-	-	-	1	1
		LGU+	-	-	-	-	-	1	1
		유통점	-	-	-	-	-	35	35
		소 계	**-**	**-**	**-**	**-**	**-**	**39**	**39**
	부 가 통 신 분 야	특수유형 부가통신	-	-	-	5	-	-	5
		소 계	**-**	**-**	**-**	**5**	**-**	**-**	**5**
	방 송 분 야	SO	-	-	-	3	-	-	3
		소 계	**-**	**-**	**-**	**3**	**-**	**-**	**3**
	합 계		**-**	**2**	**-**	**8**	**-**	**39**	**49**
2020년	유 선 분 야	SKT	-	1	-	-	-	-	1
		SKB	-	1	-	-	-	-	1
		KT	-	1	-	-	-	-	1
		LGU+	-	1	-	-	-	-	1
		기타	1	-	-	-	-	-	1
		소 계	**1**	**4**	**-**	**-**	**-**	**-**	**5**
	무 선 분 야	SKT	-	-	-	-	-	1	1
		KT	-	-	-	-	-	1	1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저해	협정 위반	기타[1]			
		LGU+	-	-	-	-	-	1	1
		유통점	-	-	-	-	-	124	124
		소 계	**-**	**-**	**-**	**-**	**-**	**127**	**127**
	부가통신 분야	부가통신	-	22	-	-	-	-	22
		특수유형 부가통신	-	-	-	4	-	-	4
		소 계	**-**	**22**	**-**	**4**	**-**	**-**	**26**
	방송 분야	미디어렙	-	-	-	1	-	-	1
		소 계	**-**	**-**	**-**	**1**	**-**	**-**	**1**
	합 계		**1**	**26**	**-**	**5**	**-**	**127**	**159**
2021년	유선 분야	SKT	1	-	-	-	-	-	1
		KT	1* *동일 사건 금지행위 중복 해당	2*	-	-	-	-	3
		LGU+	1	-	-	-	-	-	1
		SKB	1	-	-	-	-	-	1
		소 계	**4**	**2**	**-**	**-**	**-**	**-**	**6**
	무선 분야	SKT	-	-	-	-	-	1	1
		KT	-	1	-	-	-	1	2
		LGU+	1	-	-	-	-	1	2
		유통점	1	-	-	1	-	39	41
		기타	-	-	-	-	-	1	1
		소 계	**2**	**1**	**-**	**1**	**-**	**43**	**47**
	합 계		**6**	**3**	**-**	**1**	**-**	**43**	**53**
2022년	유선 분야	SKT	-	1	-	-	-	-	1
		KT	-	1	-	-	-	-	1
		SKB	-	1	-	-	-	-	1
		LGU+	-	1	-	-	-	-	1
		SO	-	3	-	-	-	-	3
		소 계	**-**	**7**	**-**	**-**	**-**	**-**	**7**
	무선 분야	유통점	-	-	-	-	-	24	24
		소 계	**-**	**-**	**-**	**-**	**-**	**24**	**24**
	방 송	지상파	-	-	-	1	-	-	1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저해	협정 위반	기타[1]			
	분 야	SO	-	-	-	23	-	-	23
		소 계	**-**	**-**	**-**	**24**	**-**	**-**	**24**
	합 계		**-**	**7**	**-**	**24**	**-**	**24**	**55**
2023년	무 선 분 야	LGU+	-	1	-	-	-	-	1
		유통점	-	-	-	-	-	56	56
		소 계	**-**	**1**	**-**	**-**	**-**	**56**	**57**
	부 가 통 신 분 야	어도비	-	1	-	-	-	-	1
		소 계	**-**	**1**	**-**	**-**	**-**	**-**	**-**
	합 계		**-**	**2**	**-**	**-**	**-**	**56**	**58**
총합계			**46**	**209**	**3**	**62**	**3**	**874**	**1,197**

1) 기타 : 수익배분 제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비용의 부당전가, 통신품질관련 정보의 명확한 고지 등 개선 권고, 거래조건 차별,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 공정경쟁 저해 등

< 4-4-3. 연도별 사업자별 금지행위 건수 >

(단위 : 건)

연 도	구 분	사업자	건수	계
2014년	무선 분야	SKT	4	48
		KT	4	
	부가 통신 분야	LGU+	4	10
		유통점	36	
	방송 분야	웹하드사업자	10	7
		SO사업자	7	
	합 계		**65**	
2015년	유선 분야	SKT	2	29
		KT	2	
		SKB	2	
		LGU+	2	
		SO사업자	21	
	무선 분야	SKT	3	116
		KT	2	
		LGU+	4	
		유통점	107	

연 도	구 분	사업자	건수	계
	방송 분야	SO사업자 등	4	4
	합 계		**149**	
2016년	유선 분야	SKT	1	8
		KT	2	
		SKB	1	
		LGU+	1	
		SO사업자	3	
	무선 분야	LGU+	2	184
		유통점	163	
		알뜰폰사업자	19	
	부가통신 분야	부가통신사업자	2	5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3	
	방송 분야	SO사업자	14	17
		IPTV사업자	3	
	합 계		**214**	
2017년	유선 분야	SKT	1	4
		KT	1	
		SKB	1	
		LGU+	1	
	무선 분야	SKT	1	48
		KT	2	
		LGU+	1	
		유통점	44	
	방송 분야	TV홈쇼핑	7	7
	합 계		**59**	
2018년	유선 분야	KT	1	21
		SKB	1	
		LGU+	1	
		기타	18	
	무선 분야	SKT	2	234
		KT	2	
		LGU+	2	
		유통점	228	
	부가통신사업분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1	1

연 도	구 분	사업자	건수	계
	방송 분야	SO	2	2
	합 계		**258**	
2019년	유선 분야	SKT	1	2
		SKB	1	
		기타	-	
	무선 분야	SKT	2	39
		KT	1	
		LGU+	1	
		유통점	35	
	부가통신사업분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5	5
	방송 분야	SO	3	3
	합 계		**49**	
2020년	유선 분야	SKT	1	5
		KT	1	
		SKB	1	
		LGU+	1	
		기타	1	
	무선 분야	SKT	1	127
		KT	1	
		LGU+	1	
		유통점	124	
	부가통신사업분야	부가통신사업자	22	26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4	
	방송 분야	미디어렙	1	1
	합 계		**159**	
2021년	유선 분야	SKT	1	5
		KT	2	
		SKB	1	
		LGU+	1	
	무선 분야	SKT	1	47
		KT	2	
		LGU+	2	
		유통점	41	

연 도	구 분	사업자	건수	계
		기타	1	
	합 계		**52**	
2022년	유선 분야	SKT	1	7
		KT	1	
		SKB	1	
		LGU+	1	
		SO사업자	3	
	무선 분야	유통점	24	24
	방송 분야	지상파	1	24
		SO	23	
	합 계		**55**	
2023년	무선 분야	LGU+	1	57
		유통점	56	
	부가통신사업분야	어도비(Adobe)	1	1
	합 계		**58**	

□ 사업자별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o 지난 10년간(2014~2023년)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행위중지 명령이 9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공표 867건, 과태료 858건, 절차개선 217건 순으로 나타났다.

o 사업자별로 유선분야에서는 SO사업자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선분야에서는 이동통신 유통점이 2,5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분야에서는 SO사업자가 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 4-4-4. 사업자별 시정조치 유형별 전체현황('14~'23) >

(단위 : 건)

구분	사업자	유형별 시정조치								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변경	행위중지	시정명령공표	절차개선	기타[1]	
유선분야	SKT	-	5	-	1	5	6	8	9	34
	KT	-	8	-	1	6	7	9	10	41
	SKB	-	8	-	1	6	7	9	10	41
	LGU+	-	7	-	1	6	6	8	9	37
	SO	-	20	-	-	17	6	20	23	86
	기타	-	20	-	1	19	19	21	20	100
	소 계	**-**	**68**	**-**	**5**	**59**	**51**	**75**	**81**	**339**
무선분야	SKT	3	13	1	-	13	6	5	22	63
	KT	1	15	-	-	14	8	5	24	67
	LGU+	3	18	1	1	17	8	10	28	86
	유통점	-	2	844	-	828	703	10	162	2,549
	알뜰폰사업자	-	19	1	19	20	20	19	39	137
	소 계	**7**	**67**	**847**	**20**	**892**	**745**	**49**	**275**	**2,902**
부가통신분야	부가통신사업자	-	4	-	-	3	25	25	28	85
	특수유형부가통신	-	5	10	-	10	-	11	43	79
	소 계	**-**	**9**	**10**	**-**	**13**	**25**	**36**	**71**	**164**
방송분야	지상파	-	1	-	-	-	1	1	1	4
	SO	-	43	-	7	20	34	44	59	207
	IPTV	-	3	-	-	3	3	3	3	15
	TV홈쇼핑	-	-	1	-	7	7	7	7	29
	미디어렙	-	2	-	-	2	1	2	2	9
	소 계	**-**	**49**	**1**	**7**	**32**	**46**	**57**	**72**	**264**
총 계		**7**	**193**	**858**	**32**	**996**	**867**	**217**	**499**	**3,669**

※ 동일 조사사건으로 1개 사업자가 다수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함

1) 이행계획 제출 및 결과보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기술적 조치

< 4-4-5. 연도별 사업자별 시정조치 세부현황 >

(단위 : 건)

연 도	구분	사업자	유 형 별 시 정 조 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변경	행위중지	시정명령공표	절차개선	기타	계
2014년	무 선 분 야	SKT	2	3	-	-	3	-	-	10	18
		KT	1	3	-	-	3	-	-	10	17
		LGU+	2	3	-	-	3	-	-	10	18
		유통점	-	-	36	-	36	-	-	72	144
		소 계	**5**	**9**	**36**	**-**	**45**	**-**	**-**	**102**	**197**
	부 가 통 신 분 야	특수유형부가통신	-	5	-	-	10	-	10	30	55
		소 계	**-**	**5**	**-**	**-**	**10**	**-**	**10**	**30**	**55**
	방 송 분 야	SO	-	7	-	7	-	-	7	14	35
		소 계	**-**	**7**	**-**	**7**	**-**	**-**	**7**	**14**	**35**
	합 계		**5**	**21**	**36**	**7**	**55**	**-**	**17**	**146**	**287**
2015년	유 선 분 야	SKT	-	1	-	-	2	-	2	2	7
		KT	-	2	-	-	2	-	2	2	8
		SKB	-	2	-	-	2	-	2	2	8
		LGU+	-	2	-	-	2	-	2	2	8
		SO	-	14	-	-	14	-	14	14	56
		기타	-	1	-	1	1	-	2	1	6
		소 계	**-**	**22**	**-**	**1**	**23**	**-**	**24**	**23**	**93**
	무 선 분 야	SKT	1	4	-	-	4	-	4	4	17
		KT	-	4	-	-	4	-	4	4	16
		LGU+	-	7	-	-	7	-	7	7	28
		유통점	-	2	97	-	89	-	10	89	287
		소 계	**-**	**17**	**97**	**-**	**104**	**-**	**25**	**104**	**348**
	방 송 분 야	SO	-	3	-	-	3	-	3	3	12
		미디어렙	-	1	-	-	1	-	1	1	4
		소 계	-	4	-	-	4	-	4	4	16
	합 계		**1**	**43**	**97**	**1**	**131**	**-**	**53**	**131**	**457**
2016년	유 선 분 야	SKT	-	1	-	-	1	1	1	2	6
		KT	-	1	-	-	1	1	1	2	6
		LGU+	-	1	-	-	1	1	1	2	6
		SKB	-	1	-	-	1	1	1	2	6
		SO사업자	-	3	-	-	3	3	3	6	18
		소 계	**-**	**7**	**-**	**-**	**7**	**7**	**7**	**14**	**42**
	무 선	SKT	-	-	-	-	-	-	-	-	-

연 도	구분	사업자	유 형 별 시 정 조 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변경	행위중지	시정명령공표	절차개선	기타	계
	분 야	KT	-	1	-	-	1	1	-	2	5
		LGU+	1	1	1	1	1	1	1	2	9
		유통점	-	-	159	-	153	153	-	-	465
		알뜰폰사업자	-	19	-	19	19	19	19	38	133
		소 계	**-**	**21**	**160**	**20**	**174**	**174**	**20**	**42**	**611**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	-	2	-	-	2	2	2	4	12
		특수유형부가통신	-	-	3	-	-	-	-	3	6
		소 계	-	2	3	-	2	2	2	7	18
	방 송 분 야	IPTV	-	3	-	-	3	3	3	3	15
		SO	-	13	-	-	14	14	14	14	69
		소 계	**-**	**16**	**38**	**-**	**17**	**17**	**17**	**17**	**84**
	합 계		**1**	**46**	**163**	**20**	**200**	**200**	**46**	**80**	**756**
2017년	유 선 분 야	SKT	-	-	-	1	1	1	1	1	5
		KT	-	-	-	1	1	1	1	1	5
		LGU+	-	1	-	1	1	1	1	1	6
		SKB	-	1	-	1	1	1	1	1	6
		소 계	**-**	**2**	**-**	**4**	**4**	**4**	**4**	**4**	**22**
	무 선 분 야	SKT	-	1	-	-	1	1	-	1	4
		KT	-	1	-	-	1	1	-	2	5
		LGU+	-	1	-	-	1	1	-	1	4
		유통점	-	-	44	-	43	43	-	-	130
		소 계	**-**	**3**	**44**	**-**	**46**	**46**	**-**	**4**	**143**
	방 송 분 야	TV홈쇼핑	-	-	1	-	7	7	7	7	29
		소 계	**-**	**-**	**1**	**-**	**7**	**7**	**7**	**7**	**29**
	합 계		**-**	**5**	**45**	**4**	**57**	**57**	**11**	**15**	**194**
2018년	유 선 분 야	SKT	-	-	-	-	-	-	-	-	-
		KT	-	1	-	-	1	1	1	1	5
		LGU+	-	1	-	-	1	1	1	1	5
		SKB	-	1	-	-	1	1	1	1	5
		기타	-	18	-	-	17	18	18	18	89
		소 계	**-**	**6**	**-**	**-**	**253**	**275**	**22**	**28**	**584**
	무 선 분 야	SKT	-	2	-	-	2	2	-	2	8
		KT	-	2	-	-	2	2	-	2	8
		LGU+	-	2	-	-	2	2	-	2	8
		유통점	-	-	228	-	228	228	-	-	684
		소 계	**-**	**6**	**228**	**-**	**234**	**234**	**-**	**6**	**708**

연 도	구분	사업자	유 형 별 시 정 조 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변경	행위중지	시정명령공표	절차개선	기타	계
	부가통신분야	특수유형부가통신	-	-	1	-	-	-	1	1	3
		소 계	**-**	**-**	**1**	**-**	**-**	**-**	**1**	**1**	**3**
	방송분야	SO	-	2	-	-	2	2	2	2	10
		소 계	**-**	**2**	**-**	**-**	**2**	**2**	**2**	**2**	**10**
	합 계		**-**	**29**	**229**	**-**	**256**	**257**	**24**	**30**	**825**
2019년	유선분야	SKT	-	1	-	-	-	1	1	1	4
		KT	-	-	-	-	-	-	-	-	-
		LGU+	-	-	-	-	-	-	-	-	-
		SKB	-	1	-	-	-	1	1	1	4
		기타	-	-	-	-	-	-	-	-	-
		소 계	**-**	**5**	**42**	**-**	**44**	**46**	**2**	**7**	**146**
	무선분야	SKT	-	1	1	-	1	1	1	3	8
		KT	-	1	-	-	1	1	-	1	4
		LGU+	-	1	-	-	1	1	-	1	4
		유통점	-	-	35	-	35	35	-	-	105
		소 계	**-**	**10**	**42**	**-**	**38**	**38**	**1**	**5**	**134**
	부가통신분야	특수유형부가통신	-	-	2	-	-	-	-	5	7
		소 계	**-**	**-**	**2**	**-**	**-**	**-**	**-**	**5**	**7**
	방송분야	SO	-	1	-	-	1	1	1	3	7
		소 계	**-**	**1**	**-**	**-**	**1**	**1**	**1**	**3**	**7**
	합 계		**-**	**6**	**38**	**-**	**39**	**41**	**4**	**15**	**143**
2020년	유선분야	SKT	-	1	-	-	1	1	1	1	5
		KT	-	1	-	-	1	1	1	1	5
		LGU+	-	1	-	-	1	1	1	1	5
		SKB	-	1	-	-	1	1	1	1	5
		기타	-	1	-	-	1	1	1	1	5
		소 계	**-**	**5**	**-**	**-**	**5**	**5**	**5**	**5**	**25**
	무선분야	SKT	-	1	-	-	1	1	-	1	4
		KT	-	1	-	-	1	1	-	1	4
		LGU+	-	1	-	-	1	1	-	1	4
		유통점	-	-	124	-	124	124	-	-	372
		소 계	**-**	**3**	**124**	**-**	**127**	**127**	**-**	**3**	**384**
	부가통신분야	부가통신	-	1	-	-	-	22	22	23	68
		특수유형부가통신	-	-	4	-	-	-	-	4	8
		소 계	**-**	**1**	**4**	**-**	**-**	**22**	**22**	**27**	**76**

연 도	구분	사업자	유 형 별 시 정 조 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변경	행위중지	시정명령공표	절차개선	기타	계
	방 송 분 야	미디어렙	-	1	-	-	1	1	1	1	5
		소 계	**-**	**1**	**-**	**-**	**1**	**1**	**1**	**1**	**5**
	합 계		**-**	**10**	**128**	**-**	**133**	**155**	**28**	**36**	**490**
2021년	유 선 분 야	SKT	-	-	-	-	-	1	1	1	**3**
		KT	-	2	-	-	-	2	2	2	**8**
		LGU+	-	-	-	-	-	1	1	1	**3**
		SKB	-	-	-	-	-	1	1	1	**3**
		기타	-	-	-	-	-	-	-	-	**-**
		소 계	**-**	**2**	**-**	**-**	**-**	**5**	**5**	**5**	**17**
	무 선 분 야	SKT	-	1	-	-	1	1	-	1	**4**
		KT	-	2	-	-	1	2	1	2	**8**
		LGU+	-	2	-	-	1	2	1	2	**8**
		유통점	-	-	41	-	40	40	-	1	**122**
		기타	-	-	1	-	1	1	-	1	**4**
		소 계	**-**	**5**	**42**	**-**	**44**	**46**	**2**	**7**	**146**
	합 계		**-**	**7**	**42**	**-**	**44**	**51**	**7**	**12**	**163**
2022년	유 선 분 야	SKT	-	1	-	-	-	1	1	1	**4**
		KT	-	1	-	-	-	1	1	1	**4**
		LGU+	-	1	-	-	-	1	1	1	**4**
		SKB	-	1	-	-	-	1	1	1	**4**
		SO	-	3	-	-	-	3	3	3	**12**
		소 계	**-**	**7**	**-**	**-**	**-**	**7**	**7**	**7**	**28**
	무 선 분 야	유통점	-	-	24	-	24	24	-	-	**72**
		소 계	**-**	**-**	**24**	**-**	**24**	**24**	**-**	**-**	**72**
	방 송 분 야	지상파	-	1	-	-	-	1	1	1	**4**
		SO	-	17	-	-	-	17	17	23	**74**
		소 계	**-**	**18**	**-**	**-**	**-**	**18**	**18**	**24**	**77**
	합 계		**-**	**25**	**24**	**-**	**24**	**49**	**25**	**31**	**178**
2023년	무 선 분 야	LGU+	-	-	-	-	-	-	1	2	3
		유통점	-	-	56	-	56	56	-	-	168
		소 계	**-**	**-**	**56**	**-**	**56**	**56**	**1**	**2**	**171**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	-	1	-	-	1	1	1	1	5
		소 계	**-**	**1**	**-**	**-**	**1**	**1**	**1**	**1**	**5**
	합 계		**-**	**1**	**56**	**-**	**57**	**57**	**2**	**3**	**176**

※ 동일 조사사건으로 1개 사업자에 다수의 시정조치 명령을 포함함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세부현황

o 지난 10년간(2014~2023년) 금지행위 등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내역을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 **(유선 분야)**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중 KT가 113억 1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 **(무선 분야)**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SKT가 약 1,300억원으로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 **(방송 분야)**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SO사업자에게 21억 9,321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4-4-6.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전체현황('14~'23)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자	과징금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저해[1]	기타[2]	
유선 분야	SKT	-	3,1290,000	-	**3,129,000**
	KT	31,900	11,269,200	-	**11,301,100**
	SKB	-	3,273,600	-	**3,273,600**
	LGU+	-	10,274,100	-	**10,274,100**
	SO	-	2,695,100	-	**2,695,100**
	기타	390,500	651,700	-	**1,042,200**
	소 계	**422,400**	**31,292,700**	**-**	**31,715,100**
무선 분야	SKT	-	128,495,300	1,490,000	**129,985,300**
	KT	-	47,350,100	1,140,000	**48,490,100**
	LGU+	-	59,928,860	1,160,000	**61,088,860**
	알뜰폰사업자	-	834,500	-	**834,500**
	소 계	**-**	**236,608,760**	**3,790,000**	**240,398,760**
부가통신 분야	부가통신사업자	-	2,577,860	-	**2,577,860**
	소 계	**-**	**2,577,860**	**-**	**2,577,860**
방송 분야	지상파	-	-	24,700	**24,700**
	SO	1,524,763	-	668,450	**2,193,213**
	IPTV	770,400	-	-	**770,400**
	미디어렙	-	-	270,000	**270,000**
	소 계	**2,295,163**	**-**	**963,150**	**3,258,313**
총 계		**2,717,563**	**270,479,320**	**4,753,150**	**277,950,033**

1)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 부과 포함

2) 기타 : 수익배분 제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거래조건 차별 등

< 4-4-7. 연도별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저해[1]	기타[2]	
2014년	무 선 분 야	SKT	-	54,550,000	-	54,550,000
		KT	-	17,110,000	-	17,110,000
		LGU+	-	18,960,000	-	18,960,000
		소 계	**-**	**90,620,000**	**-**	**90,620,000**
	부 가 통 신 분 야	특수유형 부가통신	-	59,860	-	59,860
		소 계	**-**	**59,860**	**-**	**59,860**
	방 송 분 야	SO	-	-	200,430	200,430
		소 계	**-**	**-**	**200,430**	**200,430**
	합 계		**-**	**90,679,860**	**200,430**	**90,880,290**
2015년	유 선 분 야	SKT	-	910,000	-	910,000
		KT	-	910,000	-	910,000
		SKB	-	280,000	-	280,000
		LGU+	-	910,000	-	910,000
		SO	-	1,336,500	-	1,336,500
		소 계	**-**	**4,346,500**	**-**	**4,346,500**
	무 선 분 야	SKT	-	28,526,000	-	28,526,000
		KT	-	922,000	-	922,000
		LGU+	-	6,283,360	-	6,283,360
		소 계	**-**	**35,731,360**	**-**	**35,731,360**
	방 송 분 야	SO	137,000	-	226,420	363,420
		미디어렙	-	-	240,000	240,000
		소 계	**137,000**	**-**	**466,420**	**603,420**
	합 계		**137,000**	**40,077,860**	**466,420**	**40,681,280**
2016년	유 선 분 야	SKT	-	1,280,000	-	1,280,000
		KT	31,900	2,330,000	-	2,361,900
		LGU+	-	4,590,000	-	4,590,000
		SKB	-	2,470,000	-	2,470,000
		SO	-	28,900	-	28,900
		소 계	**31,900**	**10,698,900**	**-**	**10,730,800**
	무 선 분 야	LGU+	-	1,820,000	-	1,820,000
		알뜰폰사업자	-	834,500	-	834,500
		소 계	**-**	**2,654,500**	**-**	**2,654,500**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사업자	-	342,000	-	342,000
		소 계	**-**	**342,000**	**-**	**342,000**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저해[1]	기타[2]	
	방 송 분 야	SO	1,229,500	-	-	1,229,500
		IPTV	770,400	-	-	770,400
		소 계	**1,999,900**	**-**	**-**	**1,999,900**
	합 계		**2,031,800**	**13,695,400**	**-**	**15,727,200**
2017년	유 선 분 야	LGU+	-	800,000	-	800,000
		SKB	-	104,000	-	104,000
		소 계	-	**904,000**	**-**	**904,000**
	무 선 분 야	SKT	-	794,000	-	794,000
		KT	-	361,000	-	361,000
		LGU+	-	969,000	-	969,000
		소 계	**-**	**2,124,000**	**-**	**2,124,000**
	합 계		**-**	**3,028,000**	**-**	**3,028,000**
2018년	유 선 분 야	KT	-	40,200	-	40,200
		LGU+	-	60,100	-	60,100
		SKB	-	3,600	-	3,600
		기타	-	661,700	-	661,700
		소 계	**-**	**755,600**	**-**	**755,600**
	무 선 분 야	SKT	-	21,350,300	-	21,350,300
		KT	-	12,541,200	-	12,541,200
		LGU+	-	16,747,500	-	16,747,500
		소 계	**-**	**50,639,000**	**-**	**50,639,000**
	방 송 분 야	SO	158,263	-	-	158,263
		소 계	**158,263**	**-**	**-**	**158,263**
	합 계		**158,263**	**51,394,600**	**-**	**51,552,863**
2019년	유 선 분 야	SKT	-	231,000	-	231,000
		SKB	-	165,000	-	165,000
		소 계	**-**	**396,000**	**-**	**396,000**
	무 선 분 야	SKT	-	975,000	-	975,000
		KT	-	851,000	-	851,000
		LGU+	-	1,025,000	-	1,025,000
		소 계	**-**	**2,851,000**	**-**	**2,851,000**
	방 송 분 야	SO	-	-	96,500	96,500
		소 계	**-**	**-**	**96,500**	**96,500**
	합 계		**-**	**3,247,000**	**96,500**	**3,343,500**
2020년	유 선 분 야	SKT	-	76,000	-	76,000
		SKB	-	251,000	-	251,000
		KT	-	264,000	-	264,000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저해[1]	기타[2]	
		LGU+	-	279,000	-	279,000
		기타	390,500	-	-	390,500
		소 계	**390,500**	**870,000**	**-**	**1,260,500**
	무 선 분 야	SKT	-	22,300,000	-	22,300,000
		KT	-	15,400,000	-	15,400,000
		LGU+	-	13,500,000	-	13,500,000
		소 계	**-**	**51,200,000**	**-**	**51,200,000**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사업자	-	867,000	-	867,000
		소 계	**-**	**867,000**	**-**	**867,000**
	방 송 분 야	미디어렙	-	-	30,000	30,000
		소 계	**-**	**-**	**30,000**	**30,000**
	합 계		**390,500**	**52,937,000**	**30,000**	**53,357,500**
2021년	유 선 분 야	KT	-	2,757,000	-	2,757,000
		소 계	**-**	**2,757,000**	**-**	**2,757,000**
	무 선 분 야	SKT	-	-	1,490,000	1,490,000
		KT	-	164,900	1,140,000	1,304,900
		LGU+	-	624,000	1,160,000	1,784,000
		소 계	**-**	**788,900**	**3,790,000**	**4,578,900**
	합 계		**-**	**3,545,900**	**3,790,000**	**7,335,900**
2022년	유 선 분 야	SKT	-	632,000	-	632,000
		KT	-	4,968,000	-	4,968,000
		LGU+	-	3,635,000	-	3,635,000
		SKB	-	1,093,000	-	1,093,000
		기타	-	236,700	-	236,700
		소 계	**-**	**10,564,700**	**-**	**10,564,700**
	방 송 분 야	지상파	-	-	24,700	24,700
		SO	-	-	115,100	115,100
		소 계	**-**	**-**	**139,800**	**139,800**
	합 계		**-**	**-**	**139,800**	**10,704,500**
2023년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사업자	-	1,309,000	-	1,309,000
		소 계	**-**	**1,309,000**	**-**	**1,309,000**
	합 계		**-**	**1,309,000**	**-**	**1,309,000**

1) 단말기유통법을 위반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 포함

2) 수익배분 제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시청자 정보 부당 유용 등

□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세부현황

o 지난 10년간(2014~2023년) 금지행위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총 16억 8,86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4-4-8.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전체현황('14~'23)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합 계
		단말기유통법 위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거짓자료의 제출 등	
무 선 분 야	SKT	11,500	-	-	**11,500**
	LGU+	22,500	-	-	**22,500**
	이동통신유통점	1,636,600	-	20,100	**1,656,700**
	기타	18,000	-	-	**18,000**
	소계	**1,688,600**	**-**	**20,100**	**1,708,700**
부 가 통 신 분 야	특수유형부가통신	-	74,200	-	**74,200**
	소계	**-**	**74,200**	**-**	**74,200**
방 송 분 야	홈쇼핑	-	-	10,000	**10,000**
	소계	-	-	10,000	**10,000**
총 계		**1,688,600**	**74,200**	**30,100**	**1,792,900**

< 4-4-9. 연도별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세부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합 계
			단말기유통법 위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거짓자료의 제출 등	
2014년	무 선	이동통신 유통점(36개사)	59,500	-	-	59,500
		소 계	**59,500**	**-**	**-**	**59,500**
	합 계		**59,500**	**-**	**-**	**59,500**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합 계
			단말기유통 법 위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거짓자료의 제출 등	
2015년	무 선	SKT(2건)	10,000			10,000
		이동통신 유통점 (97개사)	193,000	-	-	179,500
		소 계	**203,000**	**-**	**-**	**189,500**
	합 계		**203,000**	**-**	**-**	**203,000**
2016년	무 선	LGU+	22,500	-	-	**22,500**
		이동통신 유통점 (159개사)	255,500	-	-	**255,500**
		소 계	**278,000**	**-**	**-**	**278,000**
	부 가 통 신	특수유형부가통신 (3개사)	-	14,700	-	14,700
		소 계	**-**	**14,700**	**-**	**14,700**
	합 계		**278,000**	**14,700**	**-**	**292,700**
2017년	무 선	이동통신 유통점 (44개사)	50,000	-	-	50,000
		소 계	**50,000**	**-**	**-**	**50,000**
	방 송	TV홈쇼핑 (1개사)	-	-	10,000	10,000
		소 계	**-**	**-**	**10,000**	**10,000**
	합 계		**50,000**	**-**	**10,000**	**60,000**
2018년	무 선	이동통신 유통점 (228개사)	290,700	-	-	286,700
		소 계	**290,700**	**-**	**-**	**286,700**
	부 가 통 신	특수유형부가통신 (1개사)	-	10,500	-	10,500
		소 계	**-**	**10,500**	**-**	**10,500**
	합 계		**290,700**	**10,500**	**-**	**301,200**
2019년	무 선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 (36개사)	105,400	-	-	105,400
		소 계	**105,400**	**-**	**-**	**105,400**
	부 가 통 신	특수유형부가통신 (2개사)	-	21,000	-	21,000
		소 계	**-**	**21,000**	**-**	**21,000**
	합 계		**105,400**	**21,000**	**-**	**126,400**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합 계
			단말기유통 법 위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거짓자료의 제출 등	
2020년	무 선	이동통신 유통점 (124개사)	272,400	-	-	272,400
		소 계	**272,400**	**-**	**-**	**272,400**
	부 가 통 신	특수유형부가통신 (4개사)	-	28,000	-	28,000
		소 계	**-**	**28,000**	**-**	**28,000**
	합 계		**272,400**	**28,000**	**-**	**300,400**
2021년	무 선	이동통신 유통점 및 기타(41개)	199,200	-	20,100	219,300
		소 계	**199,200**	**-**	**20,100**	**219,300**
	합 계		**199,200**	**-**	**20,100**	**219,300**
2022년	무 선	이동통신 유통점 (24개사)	87,600	-	-	87,600
		소 계	**87,600**	**-**	**-**	**87,600**
	합 계		**87,600**	**-**	**-**	**87,600**
2023년	무 선	이동통신 유통점 (56개사)	142,800	-	-	142,800
		소 계	142,800	**-**	**-**	142,800
	합 계		**142,800**	**-**	**-**	**142,800**

Ⅱ. 조사사건 심의·의결서

1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4.11., 9.26.)

2 ㈜엘지유플러스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6.21.)

3 어도비(Adobe)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1.29.)

1.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위반(4.11, 9.26)

1. 개 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3년 한 해 동안 4.11., 9.26. 2차례에 걸쳐 유통점 56개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억 4,28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22.6.13. ~ 10.31. 기간 동안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

또한 2022년 1월 이후 국민신문고와 제보를 통해 신고된 유통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26개 판매점에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 ①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②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사업장 공표(7일, 9일)를 명령하고, 과다 지원금 1회 위반 56개점에 각 300만원~360만원, 서비스 가입·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 배제한 1개점에 300만원, 총 56개점(중복 위반 1개점)에 1억 4,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2. 관련 사례

1 판매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4.11)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3 - 11 - 036호(사건번호 : 202212조사068~069)

안 건 명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3. 04. 11.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 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배경

1. 일명 '성지점'으로 불리는 일부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과다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단말기유통법 위반사실 인지에 따라 사실조사('22.6.13~10.31)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심인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붙임1 참조】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제5호는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5.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제2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나. 위법성 판단

6. 피심인들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7. 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8. 피심인들은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4. 과태료 부과

9. 피심인들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10.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1.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나 과다 지원금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 미만인 점을 고려,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가중한다.

12. 다만,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3.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기준금액 3,000,000원에 30%를 가중한 금액(+9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900,000원)을 합산한 3,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14.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5.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4월 1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3 - 11 - 37호(사건번호 : 202212조사070~096)

안 건 명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27개 유통점

의결연월일　　2023. 04. 11.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 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배경

1. 일명 '성지점'으로 불리는 일부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과다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단말기유통법 위반사실 인지에 따라 사실조사('22.6.13~10.31)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심인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붙임2 참조】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제5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5.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제2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나. 위법성 판단

6. 피심인들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7. 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8. 피심인들은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4. 과태료 부과

9. 피심인들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10.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1.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들은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과다 지원금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12. 다만,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3.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기준금액 3,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1,5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900,000원)을 합산한 600,000원을 적용하여 각 3,6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14.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5.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4월 1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3 - 11 - 038호(사건번호 : 202212조사097)

안 건 명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3. 04. 11.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 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7,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배경

1. 일명 '성지점'으로 불리는 일부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과다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단말기유통법 위반사실 인지에 따라 사실조사('22.6.13~10.31)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심인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붙임1 참조】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제5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5.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와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2호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 지급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정명령)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제2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자

나.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사실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7.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8. 피심인은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4. 과태료 부과

9.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10.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라.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지급조건으로 서비스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22조 제4항제2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1.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들은 과다 지원금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을 초과하고, 계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위반건수가 2건 이상으로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12. 다만,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3.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기준금액 6,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3,000,000원)을 30%를 감경한 금액(1,800,000원)을 합산한 1,200,000원을 적용하여 7,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14.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5.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4월 1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2 민원신고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9.26)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3 - 34(서) - 133호~155호

안 건 명 민원신고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23개 유통점

의결연월일 2023. 9. 26.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배경

1.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23.3.13.~'23.6.30.)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국민신문고('22년 1월 이후)에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심인들이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붙임2 참조】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제5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5.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제2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나. 위법성 판단

6. 피심인들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7. 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8. 피심인들은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4. 과태료 부과

9. 피심인들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10.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차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1.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 3]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들은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과다 지원금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 개별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12. 다만,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과태료 개별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3.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기준금액 3,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1,5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900,000원)을 합산한 600,000원을 적용하여 각 3,6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14.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5.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9월 26일

위 원 장　　이 동 관　(인)

부위원장　　이 상 인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3 - 34(서) - 156호

안 건 명　　민원신고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3. 9. 26.

주　　문

1. 피심인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배경

1.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23.3.13.~'23.6.30.)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국민신문고('22년 1월 이후)에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심인이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제5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5.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제2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나.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7.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8. 피심인은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4. 과태료 부과

9.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10.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차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1.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 3]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과다 지원금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 미만인 점을 고려, 개별기준 금액의 30%를 가중한다.

12. 다만,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과태료 개별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3.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기준금액 3,000,000원에 30%를 가중한 금액(+9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900,000원)을 합산하여 3,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14.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5.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9월 26일

위 원 장　　이 동 관　(인)

부위원장　　이 상 인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3 - 34(서) - 157호

안 건 명　　민원신고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3. 9. 26.

주　　문

1. 피심인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7,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배경

1.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23.3.13.~'23.6.30.)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국민신문고('22년 1월 이후)에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심인이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제5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5.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제2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나.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7.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8. 피심인은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4. 과태료 부과

9.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10.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두 번째에 해당하여 2차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1.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 3]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과다 지원금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 개별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12. 다만,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과태료 개별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3.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기준금액 6,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3,0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1,800,000원)을 합산하여 7,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14.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5.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9월 26일

위 원 장　　이 동 관　(인)

부위원장　　이 상 인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3 - 34(서) - 158호

안 건 명　　민원신고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3. 9. 26.

주　　문

1. 피심인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3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배경

1.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23.3.13.~'23.6.30.)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국민신문고('22년 1월 이후)에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심인이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제5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5.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제2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나.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7.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8. 피심인은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4. 과태료 부과

9.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10.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두 번째에 해당하여 2차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11.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 3]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과다 지원금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 개별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12. 다만,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과태료 개별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13.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기준금액 30,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15,0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9,000,000원)을 합산하여 36,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14.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5.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9월 26일

위 원 장　　이 동 관　(인)

부위원장　　이 상 인　(인)

2. ㈜엘지유플러스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6.21)

1. 개 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3. 6.21.(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엘지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이하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하였다.

㈜엘지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엘지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엘지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미유치할 경우에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감하는 영업정책을 시행함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엘지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2. 관련 사례

1 ㈜엘지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시정 조치에 관한 건(6.21)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3 - 20 - 049호 (사건번호 : 202202조사001)

안 건 명 ㈜엘지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엘지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대표자 OOO

의결연월일 2023. 6. 21.

주 문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 대리점이 부가서비스 미가입을 이유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서비스 미유치 시 휴대폰 개통불가' 및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나.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2.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을 안내하는 경우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가입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이 유

Ⅰ. 기초 사실

1.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동전화 전체 보유가입자 수는 '22.12월말 기준 1,601만명(점유율 20.8%)이고 이동통신 매출액은 '22년도 기준 6조 1,790억원이다.

2. 조사경위

2 피심인이 자사의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이하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언론 보도('21.11.19, KBS)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 저해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디즈니+ 서비스는 2019년 'The Walt Disney Company(Korea) (이하 '디즈니사')'가 출시한 가입형 온라인 스트리밍 OTT서비스로 LGU+가 `21.11.12.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개요

3 ’22. 2. 16.부터 ‘22. 11. 29.까지 피심인의 이익 저해 행위 여부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4 피심인의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기간(‘21.10.23.~12.16.) 중,

- ① 가입절차, ② 본사 및 대리점의 가입유치 영업 정책, ③ 국민신문고 및 피심인의 고객센터 민원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가입신청자 수		조사 대상		유통점 조사 내역	
휴대폰	디즈니+	LGU+	대리점	대리점/판매점	관련민원
621,588명		본사 및 지역영업단	554개	10개점/14개점*	13,335건

* 디즈니+ 무료서비스 강제가입이 문제가 된 점을 감안, 해당기간 중 가입유치 건수가 많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 대해 표본조사 하였음

3. 행위사실

가. 디즈니+ 무료서비스 제공

5 **(서비스 개요)** 피심인은 디즈니사와 2021년 9월 디즈니+ 서비스 마케팅 계약을 체결, 판매독점권을 확보하고 휴대폰 가입자(‘21.10.23.~12.16.)에게 ‘21.11.12.부터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6 **(가입절차)** ① 이용자가 피심인에게 디즈니+ 서비스 가입을 신청[1]하면, ② 피심인은 이용자에게 문자로 접속 URL* 제공하고,

* 피심인이 제공하는 디즈니사 접속 URL로 가입할 경우에만 3개월 무료이용 혜택이 가능

1) 일반적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은 태블릿 PC의 전자서식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디즈니+ 서비스는 전자서식지에 반영되기 전(11.1.~11.11.) 기간에 종이 가입신청서 양식을 만들어 가입신청을 받았다.

7 **(계약성립)** ③ 이용자는 수신된 문자의 URL을 통해 디즈니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정을 생성(계약성립) 하고 디즈니+ 서비스를 3개월 무료 이용하게 된다.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 및 계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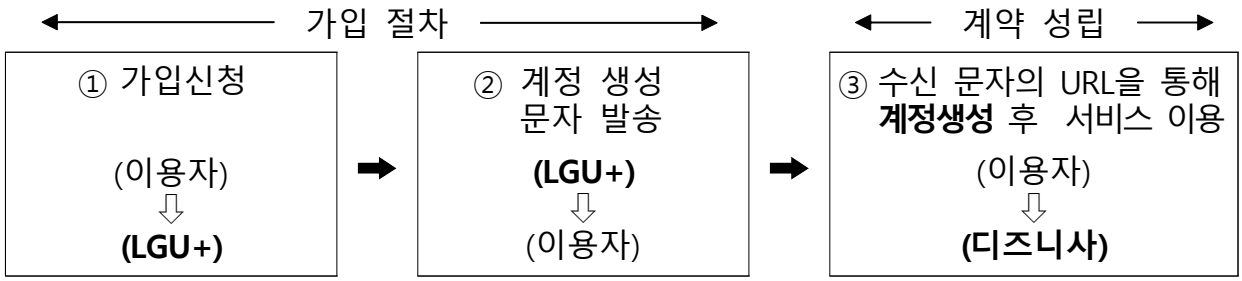

※ 디즈니+ 무료서비스는 가입 신청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디즈니사의 URL에서 본인확인 절차와 이용약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통해 비로소 계약이 완성됨

< 피심인이 가입신청자에게 발송한 문자 내용 >

[LG U+] 디즈니+ 부가서비스 안내

고객님, 가입하신 디즈니+ 부가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인터넷 주소를 통해 디즈니+ 계정을 등록 후 디즈니+를 즐겨보세요.

▶ 디즈니+ 이용하기
☞ 개별화 URL
(링크 유효기간 : yyyy-mm-dd (hh:mm))
(1개의 계정만 등록할 수 있으니, 타인에게 공유를 주의해 주세요.)

▶ 월정액
- XX개월 쿠폰 이용 후 월 9,900원(부가세 포함)
- 20XX년 X월 X일 까지 쿠폰으로 시청, 쿠폰 만료 다음 날부터 월정액 요금이 자동 청구됩니다.

▶ 가입한 디즈니+ 부가서비스 자세히 보기
☞ http://cv.uplus.kr/356.html

※ 꼭 확인하세요.
- 휴대폰 일시정지/해지할 경우 디즈니+ 이용이 중단됩니다.
단, LG U+에서 디즈니+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기 전에 디즈니+에서 유료 이용하신 경우, 디즈니+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매월 자동 결제됩니다.(이용 요금은 디즈니사에서 청구)

[LG U+] 디즈니+ 부가서비스 이용 안내

고객님, 디즈니+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월정액
- XX개월 쿠폰 이용 후 월 9,900원(부가세 포함)
- 20XX년 X월 X일(X)까지 쿠폰으로 시청, 쿠폰 만료 다음 날부터 월정액 요금이 자동 청구됩니다.

▶ 가입한 디즈니+ 부가서비스 자세히 보기
☞ http://cv.uplus.kr/356.html

※ 꼭 확인하세요.
- 휴대폰 일시정지/해지할 경우 디즈니+ 이용이 중단됩니다.
단, LG U+에서 디즈니+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기 전에 디즈니+에서 결제 수단을 등록하여 이용하셨던 고객님은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디즈니+에서 요금이 자동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LG U+에서 디즈니+ 부가서비스 해지 이후 청구되는 디즈니+ 요금 관련 문의는 디즈니+ 고객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심인은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신청자에게 '가입하신' 이라는 문구로 안내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혼란을 초래함

8 **(가입현황)** 조사 대상기간('21.10.23.~12.16.) 중 휴대폰 가입자의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 신청률은 36.1%(/621,588명)이며, 가입 신청자 중 실제 가입률은 로 나타나,

- 휴대폰 가입자 중 디즈니+ 무료서비스 최종 이용률은 /621,588)이다.

< 조사대상기간 중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자 현황 >

(단위 : 명)

휴대폰 총 가입자(A)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 신청자(B)	최종 이용 가입자(C)
621,588		

9 **(디즈니+ 무료서비스 제공)** 피심인은 디즈니+ 서비스 출시일인 '21.11.12일 3개월 무료이용권(29,700원 상당)을 지원금으로 공시하고, '21.10.23. ~ 12.16. 기간 중 디즈니+ 서비스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10 디즈니+ 서비스 출시 전(11.01.~11.11.)의 휴대폰 가입자에게는 디즈니+ 무료서비스 종이 가입신청서(A4 용지)를 받은 후 이용안내 문자를 출시일(공시일)인 11.12일에 발송하였다.

나. 디즈니+ 무료서비스 영업정책 등

1) 피심인의 본사에서 대리점에 대한 영업정책

11 **(본사목표)** 피심인은 '21.12월말까지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자 약 51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 하에 영업채널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다.

* 모바일 영업담당, 고객센터, U+숍, 홈/미디어 사업담당, 기타 등

< 피심인의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자 목표 달성안 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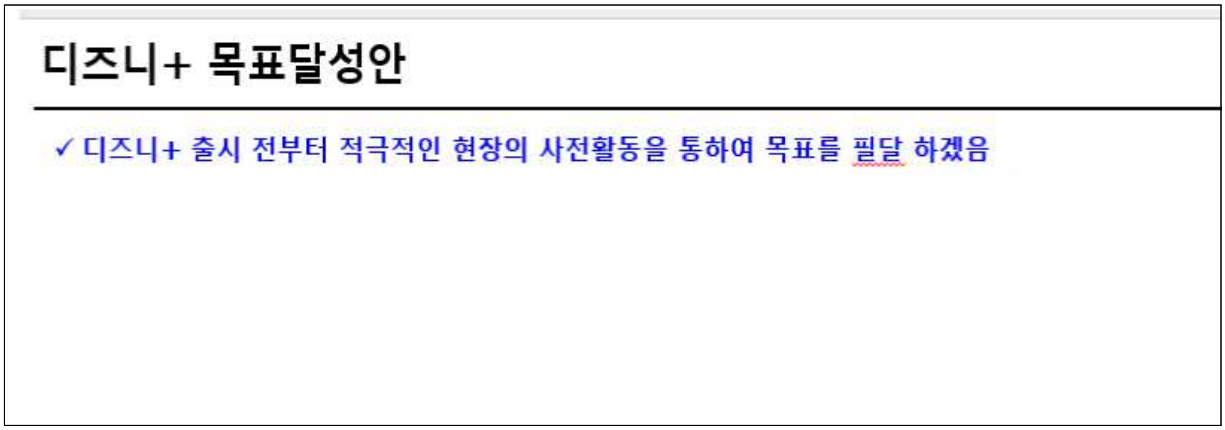

12 **(장려금 정책)** 피심인은 모든 대리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유치 장려금 건당 5,500원을 제공하고, 소매 대리점[2]에는 매장방문 가입 프로모션 명목으로 22,000원의 장려금을 추가 제공하였다.

13 또한, 도매 대리점의 월간 시상정책[3]에서 다른 항목과는 다르게 디즈니+ 무료서비스는 100% 유치할 경우에만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적극 독려하였다.

< 피심인의 도매대리점 시상정책 사례 >

[단위 : 원, VAT포함]

지표 합산 점수	총판매(건당)
21점 이상	12,100
18~20점	9,900
15~17점	7,700
12~14점	5,500
9~11점	3,300
6~8점	1,100

	항목별 점수					
지표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신규 부가서비스	80% 미만	80%	85%	90%	95%	100% 이상
투게더	2.0% 미만	2.0%	3.0%	4.0%	5.0%	6.0% 이상
5G 전환	70.0% 미만	70.0%	74.0%	78.0%	82.0%	86.0% 이상
대명+VAS	27.0% 미만	27.0%	31.0%	35.0%	39.0%	44.0% 이상

※ 지표항목의 '신규 부가서비스'가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임

2) 소매대리점은 대리점이 가입자를 직접 확보하는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도매대리점은 판매점을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는 영업방식이다.
3) 피심인이 모든 도매대리점을 대상으로 부가서비스나 특정 요금제의 가입자 유치 목표 등을 설정하고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대리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14 **(대리점 공지 등)** 피심인의 본사(지역채널) 등은 대리점에 이메일('21.10.29일)을 통해, 대리점은 판매점에 정책서 또는 카톡 등을 통해 휴대폰 가입자를 모두(100%)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공지하였다.

< 피심인(북서울 도매영업팀)의 100% 가입안내 요청 공지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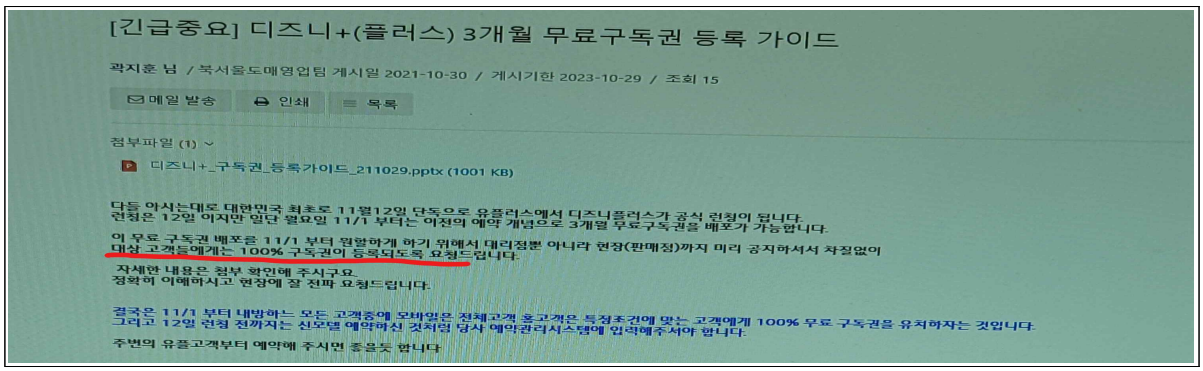
[긴급중요]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구독권 등록 가이드

곽지훈 님 / 북서울도매영업팀 게시일 2021-10-30 / 게시기한 2023-10-29 / 조회 15

메일 발송 인쇄 목록

첨부파일 (1) ~

디즈니+_구독권_등록가이드_211029.pptx (1001 KB)

다들 아시는대로 대한민국 최초로 11월12일 단독으로 유플러스에서 디즈니플러스가 공식 런칭이 됩니다.
런칭은 12일 이지만 일단 월요일 11/1 부터는 이전의 예약 개념으로 3개월 무료구독권을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 무료 구독권 배포를 11/1 부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점뿐 아니라 현장(판매점)까지 미리 공지하셔서 차질없이
대상 고객들에게는 100% 구독권이 등록되도록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확인해 주시구요.
정확히 이해하시고 현장에 잘 전파 요청드립니다.

결국은 11/1 부터 내방하는 모든 고객중에 모바일은 정체고객 등고객은 특정조건에 맞는 고객에게 100% 무료 구독권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일 런칭 전까지는 신모델 예약하신 정치입 당사 예약관리시스템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주변의 유플고객부터 예약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밑줄 내용) "대상 고객들에게는 100% 구독권이 등록되도록 요청드립니다"

15 한편, 피심인은 언론보도 이후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를 사유로 개통제한, 불합리한 차감정책 등을 하지 않도록 대리점에 공지문을 발송하였다.('21.11.24.)

2) 대리점의 판매점에 대한 영업정책

16 **(개통불가 정책)** 피심인 소속 10개 대리점을 조사한 결과, 2개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불가' 정책을 시달한 사실은 있었으나, 실제 개통 거부된 사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 A대리점의 개통불가 정책서('21.11.3.~11.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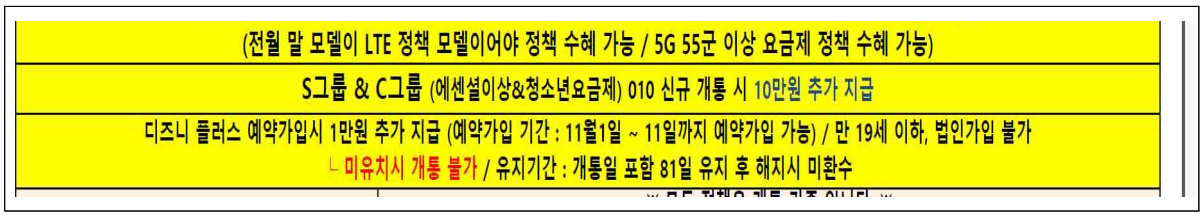
(전월 말 모델이 LTE 정책 모델이어야 정책 수혜 가능 / 5G 55군 이상 요금제 정책 수혜 가능)

S그룹 & C그룹 (에센셜이상&청소년요금제) 010 신규 개통 시 10만원 추가 지급

디즈니 플러스 예약가입시 1만원 추가 지급 (예약가입 기간 : 11월1일 ~ 11일까지 예약가입 가능) / 만 19세 이하, 법인가입 불가

└ 미유치시 개통 불가 / 유지기간 : 개통일 포함 81일 유지 후 해지시 미환수

17 **(차감정책)** 10개 대리점 중 2개 대리점은 판매점이 디즈니+ 무료서비스 유치 시에 5,5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유치시 각각 50,000원, 10,000원을 차감하는 정책을 시달하였고,

18 1개 대리점(50,000원 차감정책)은 실제 차감하지 않았으나, 1개 대리점(10,000원 차감정책)은 차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B대리점의 차감 정책서 >

▶ 부가서비스 정책		
차감 정책	21년9월15일 이후_맘대로 폰교체 미유치건(단F926, F711 등 폴드류는 휴대폰 분실/파손 폰케어 등록시 차감 면제) (출고가 26만원 미만 단말은 차감에서 제외)	-10,000
	영화 월 정액 미유치건(출고가 26만원 미만 단말은 차감에서 제외)	-10,000
	신규부가서비스(디즈니+쿠폰 가망 고객) 예약 가입 미신청시(무료 3개월 구독후 유료 전환(必안내해야함)	-50,000
	전자신청서 사용율 90%미만 접점에 대한 패널티	-10,000

3) 판매점의 디즈니+ 무료서비스 판매방식

19 **(판매점주 진술)** 판매점의 주 수익원은 휴대폰 판매 장려금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휴대폰 가입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 이용자가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을 부각하며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대리점의 영업정책을 수용하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디즈니+ 무료서비스 관련 민원 분석

21 **(분석방식)** 피심인의 고객센터를 통해 '21.11.12. ~ 12.30일까지 디즈니+ 무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13,335건 중 무작위로 116개의 녹취록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 국민 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4건[4]이며, 이 중 개통불가와 관련된 사항은 없었음

4)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가입했으나 해지를 원한다는 민원, 디즈니+ 무료

22 **(민원분석 결과)**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휴대폰 가입을 거부한다는 민원 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3 또한, 조사과정에서 대리점이 판매점에게 휴대폰 가입자의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을 종용하여 1~2시간 정도 개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5]이 있었으나 실제 개통지연 민원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4 다만, 무작위로 청취한 116건 중 32건은 이용자가 본인 스스로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가입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이었다.

25 **(가입신청 의사 확인결과)**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사실 미인지' 민원 32건 중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신청을 별도의 종이 가입신청서로 받았던 '21. 11.1.~11.11일 기간 중 휴대폰 가입자 8건에 대해 피심인의 전산시스템에서 개통서류를 확인한 결과,

26 5건은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서명과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서명이 달라 유통점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신청서에 임의로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며[6], 3건은 유통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누락한 채 개통서류를 전송하여 전산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라. 피심인의 이용자 보호조치

27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피해예방조치 요구('21.11.19.)에 대해 피심인은 자사 유통망에 '디즈니+ 미가입시 개통불가', '불합리한 차감정책' 등을 하지 않도록 공지문을 발송하였다.(21.11.24.)

서비스 가입을 반복적으로 권매한다는 민원 등이 접수되었으나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관련 민원은 없었음

5) 대리점주는 디즈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판매점주들에게 10~20분 정도 개통을 지연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판매점주들은 1~2시간 정도 지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 판매점 관계자는 이용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동의를 받아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8 아울러,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유료전환 3일 전부터 3회에 걸쳐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SMS를 통해 안내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의 이동전화서비스 개통 거부·지연 여부

가. 관련규정

29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별표4] 제5호 나목 5)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30 피심인은 대리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100% 유치하는 정책을 시달하여 일부 대리점이 판매점에 디즈니+ 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불가' 또는 '불합리한 차감 정책'을 시행하고 유선, 카톡 등을 통해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유치하도록 독려함에 따라,

31 일부 이용자의 휴대폰 개통이 1~2시간 지연된 사례는 있었으나,

① 민원분석 등 실제 조사과정에서 개통이 거부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한 점, ② 판매점주는 수입의 대부분이 휴대폰 가입자 유치 시 받는 판매 장려금이므로 부가서비스 미유치 사유로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일부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유치하기 위해 개통이 1~2시간 지연된 사례가 일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의 개통지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피심인의 가입의사 확인절차 없는 디즈니+ 무료서비스 계약체결 여부

가. 관련규정

32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별표4] 제5호 나목 2)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33 이용자가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 신청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민원 32건에 대하여,

34 피심인은 휴대폰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서비스인 디즈니+ 무료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35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은 ① 가입신청 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② 이용자가 LGU+가 제공한 URL에 접속하여 디즈니+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쳐 개인별 계정을 생성한 후에 비로소 계약체결이 완성[7]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중요사항 거짓·미고지 여부

가. 관련규정

36 법 제50조 제1항 제5의2호, 같은 법 시행령[별표4] 제5의2호 나목에서는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요금, 할부수수료, 결합판매 구성상품 할인율, 경품, 약정조건 등 중요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

7) 법률 자문결과, 피심인이 이용자에게 문자를 통해 URL을 제공한 행위는 계약과정에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되며 그 행위가 이용계약 체결의 완성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37 피심인이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SMS를 통해 디즈니+ 서비스에 가입되었다고 안내한 것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38 피심인은 가입신청 이용자에게 ①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 절차(이용요금 안내 등) 문자를 보내고, ② 특히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디즈니+ 서비스를 3개월 무료로 이용한 후에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3차례에 걸쳐 SMS 문자를 통해 고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피심인의 계약서 송부의무 이행 여부

가. 관련규정

39 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서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40 피심인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시 이용자에게 휴대폰 계약서는 제공하였으나 가입조건과 연계하여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디즈니+ 무료서비스의 가입신청서는 송부하지 않았다.

41 그러나, '디즈니+ 무료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은 이용자가 디즈니+ 서비스 계정을 생성한 후에 비로소 성립되므로 가입신청서 접수만으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8],

42 디즈니+ 가입신청서에는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 교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업무처리 절차의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가. 관련규정

43 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44 피심인 본사는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즈니+ 무료서비스 100% 가입 목표를 설정한 후 디즈니+ 무료서비스 유치시 별도의 장려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등 공식창구가 아닌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하여 대리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휴대폰 가입자 모두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45 피심인의 일부 대리점은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 정책을 판매점에 시달하였고,

46 일부 판매점에서는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없이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47 피심인은 이용자에게 '가입하신 디즈니+ 부가서비스'라고 표기된 안내문을 SMS로 발송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

48 이처럼 피심인이 소속 대리점에 100% 가입 유치 정책을 시달하고, 일부

8) 법률 자문결과,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신청만으로는 디즈니+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동전화 약관에는 교부의무가 있는 계약서가 이동전화 계약에 한정되어 있어 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대리점이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개통불가', '불합리한 차감' 정책서를 판매점에 시달하여, 일부 판매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토록 한 행위는,

49 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과다지급 여부

가. 관련규정

50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4항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선택약정 가입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51 피심인이 디즈니+ 서비스 3개월 무료이용권(29,700원 상당)을 '21.11.12.에 공시일 이전('21.10.23.~11.11.) 지원금 가입자와 선택약정(공시지원금이 아닌 요금할인 혜택) 가입자에게 제공하였으나,

52 ① 디즈니+ 무료서비스 공시 이전 가입자의 실제 혜택이 공시('21.11.12.) 이후에 지급되어 그 시점에는 공시가 이루어진 점 ② 선택약정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다지원금 지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Ⅳ. 시정조치 명령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53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 대리점이 부가서비스 미가입을 이유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서비스 미유치 시 휴대폰

개통불가’ 및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제출

피심인은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권고사항

54 피심인은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을 안내하는 경우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가입 절차 및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Ⅵ 결론

55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시정명령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56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6월 21일

위원장 직무대행 김 효 재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이 상 인 (인)

3. 어도비(Adobe)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1.29)

1. 개 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3.11.29.(수) 전체회의에서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어도비(Adobe Systems Ireland Ltd.)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adobe.com)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 및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국내·외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고, 위약금 책정 타당성, 환불 관련 민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 예시 : ‘포토샵’ 서비스 이용요금 및 환불 주요내용 >

구분		이용금액(선납)	취소 시 환불 관련	비 고
연간 약정	월별청구	월 24,000원	14일 이후 **위약금*** 부과 및 환불 불가 * 위약금 = 잔여 약정기간 × 월 이용요금 × **50%**	월간약정 대비 35.1% 할인
	선불결제	연 277,200원	14일 이후 **환불 불가** ※ 일시불로 납부한 **연간 이용요금 전액 환불 불가**	월간약정 대비 37.6% 할인 (월 23,100원)
월간약정		월 37,000원	14일 이후 환불 불가	-

※ 14일 이내 취소 시 선납한 이용요금 전액 환불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또한, 어도비는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로 고지하여,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게(‘연간약정 월별청구’) 하고,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로 고지하여,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야 14일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월간약정’) 하였다.

이에 따라, 어도비가 연간 약정 중에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요금제를 운용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천6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인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2. 관련 사례

1 어도비(Adobe)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1.29)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의 결

안건번호 제2023 - 44 - 203호 (사건번호 : 202208조사011)

안 건 명 어도비(Adobe)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Adobe Systems Software Ireland Limited
대표자

주 소 4-6 River Walk Citywest Business Campus Dublin 24, D24DCW0 Ireland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의결연월일 2023. 11. 29.

주 문

1. 피심인은 아래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온라인 웹 'adobe.com' 및 모바일 앱의 계약 초기 화면에 해지 관련 환불 시점과 구체적인 위약금 부과액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 또는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나.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계약 해지 시 잔여약정 의무기간 요금의 50%로 과도하게 부과하는 위약금을 낮추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다. '연간약정 선불결제' 계약 해지 시 일시불로 납부한 이용금액의 전액 환불 불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 피심인은 위 2.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나.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4. 피심인은 위 1. 2.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 온라인 'adobe.com'(PC 웹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 포함)의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액 : ₩1,30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1 피심인은 1982년도 미국에서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01. 6. 28.부터 아일랜드에 본점을 두고, 주로 온라인 웹 'adobe.com'을 통해 '포토샵(Photo shop)', '아크로벳 프로(Acrobat Pro)' 등 70여 개 서비스를 아시아, 미국, 유럽 등 40여 개 국가에 판매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으로 가입자를 개인, 소규모 사업자, 학생·교사, 초·중·고등학교 등으로 구분·운용하며 다양한 규모의 사업자와 개인이 이용하고 있다.

※ 피심인은 '97.10.25. 대한민국(이하 '국내'라 한다)에 한국어도비시스템즈(유)를 설립하여 제품판매 마케팅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19. 1. 29.「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

< 표1 > 주요 서비스 및 제공 내용

서비스명	제공 주요 내용
포토샵(Photoshop)	사진 이미지, 그래픽 디자인 등의 보정 및 편집 프로그램
아크로벳 프로(Acrobat Pro)	PDF 작성, 편집, 서명, 관리 프로그램
인디자인(In Design)	서적, 디지털 잡지, e북, 포스터 등 제작 프로그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전 세계 이용자[9] 수는 '22. 6월말(누계 기준) 건이며 이중 국내 이용자는 %인 건이다.

<표2> 전 세계 및 국내 이용자 수 현황('22. 6월말 누계 기준)

(단위 : 건)

구 분			'19.12월말	'20.12월말	'21.12월말	'22. 6월말	비고 (연평균증감)
전체	월간 약정						
	연간 약정	월별청구					
		선불결제					
	합 계						
국내	월간 약정						
	연간 약정	월별청구					
		선불결제					
	합 계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19. 1.29.부터 '22. 6.30.까지의 관련 매출액[10]은 원이다.

<표3> 국내 매출액 현황('19. 1. 29.~'22. 6. 30.)

(단위 : 천원)

구 분	'19. 1.29. ~ '19.11.29.	'19.11.30. ~'20.11.27.	'20.11.28. ~'21.12. 3.	'21.12. 4. ~'22. 6.30.
매출액(원화)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매년 회계연도 결산을 단위로 마감

4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 웹에서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9) 1개 어도비 계정으로 여러 개를 보유할 수 있어, 이용자 수는 이용자나 계정자 수가 아니라 라이선스 수라고 함

10) 자료라고 소명

<표4> 온라인 웹(adobe.com)을 통한 계약 체결 절차(요약)

(1단계) 이용자는 원하는 서비스의 3가지 유형(월간약정, 연간약정 월별청구, 연간약정 선불결제)을 확인하고 상품을 선택 (2단계) 선택한 상품의 1개월 무료구독 등 추가혜택을 확인 (3단계) 이메일 주소 입력,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 (4단계) 결제 정보 입력, 동의 및 구독 및 취소 약관 확인 후, 서비스 시작하기

5 이용요금은 민원이 제기된 포토샵 서비스의 경우 '월간약정'은 월 37,000원으로 '연간약정 월별청구'는 월간약정 대비 35.1% 할인한 월 24,000원, '연간약정 선불결제'는 37.6% 할인한 연간 277,200원(월 23,100원 수준)을 계약 체결 시 납부하고, 위약금 및 환불은 '연간약정 월별청구'는 계약 기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잔여약정 의무기간 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는 계약 14일 이후에는 선(先)납부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표5> 포토샵의 계약 기간별 이용금액 및 환불 현황

구 분		이용금액 (VAT포함)		계약기간 중도 해지 시 환불 현황	비고
		월간	연간		
연간약정	월별 청구	24,000원 (매월 선결제)	288,000원 * 예상액	-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납부액 환불 불가 50% 위약금 부과(잔여 약정기간×월 이용요금×50%) ※ 단, 서비스는 해당월의 결제종료 시점까지 제공	월간약정 대비 35.1% 요금할인
	선불 결제	23,100원 * 예상액	277,200원 (일시납)	-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연간납부액 환불 불가 ※ 단, 서비스는 연간약정 기간의 결제종료 시점까지 제공	월간약정 대비 37.6% 요금할인
월간약정		37,000원 (매월 선결제)	444,000원 * 예상액	-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납부액 환불 불가 ※ 단, 서비스는 해당월의 결제종료 시점까지 제공	

2. 조사 배경

6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포토샵' 서비스의 이용 계약 체결 시,

과도한 위약금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 및 언론보도 등을 검토한 결과,「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피심인이 온라인 웹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서비스의 이용요금·환불 관련 자료 분석과 국내에 설립된 한국어도비시스템즈(유) 방문 및 해외본사 2인 등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3.과 같은 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행위 사실

※ 민원이 제기된 포토샵 서비스로 사실 확인

가. 이용 계약 체결 시 위약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

1) 연간약정 월별청구(1년 약정 후 매월 요금 납부)

7 피심인은 계약 14일 이후 중도 해지 시 잔여약정 의무기간 요금의 50%가 위약금으로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웹의 계약 체결 초기 화면에는 계약 14일 이후인 “OO월 OO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으로 고지하여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증적자료1> 포토샵 연간약정의 월별청구 온라인 이용계약 화면(캡쳐)

이용자가 “OO월 OO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의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8 다만,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4개의 과정[11]을 거쳐야 하는데 1단계 화면에는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나, 계속을 클릭한 후 2단계 추가 혜택안내, 3단계 이메일 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 등을 거쳐 4단계 '가입자 결제정보 입력' 화면 좌측하단에 "동의 및 구독을 클릭하면.....(중략)..... 전액 환불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OO년 OO월 OO일 이전에 취소하십시오. 귀하는 또한 사용약관과 구독 및 취소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증적자료2> 포토샵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온라인 이용계약 화면(캡쳐)

▮
이용자가 '구독 및 취소약관'을 클릭하면
⬇

11) ① 3개('월간 약정','연간약정 월별청구','연간약정 선불결제') 형태의 약정 요금제 중 1개를 선택 → ② 1개월 무료 등 추가 혜택 선택 → ③ 가입자 이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 → ④ 가입자 결제 정보 입력, 동의 및 구독(구독 및 취소 약관 포함) 확인 → ⑤ 구독(가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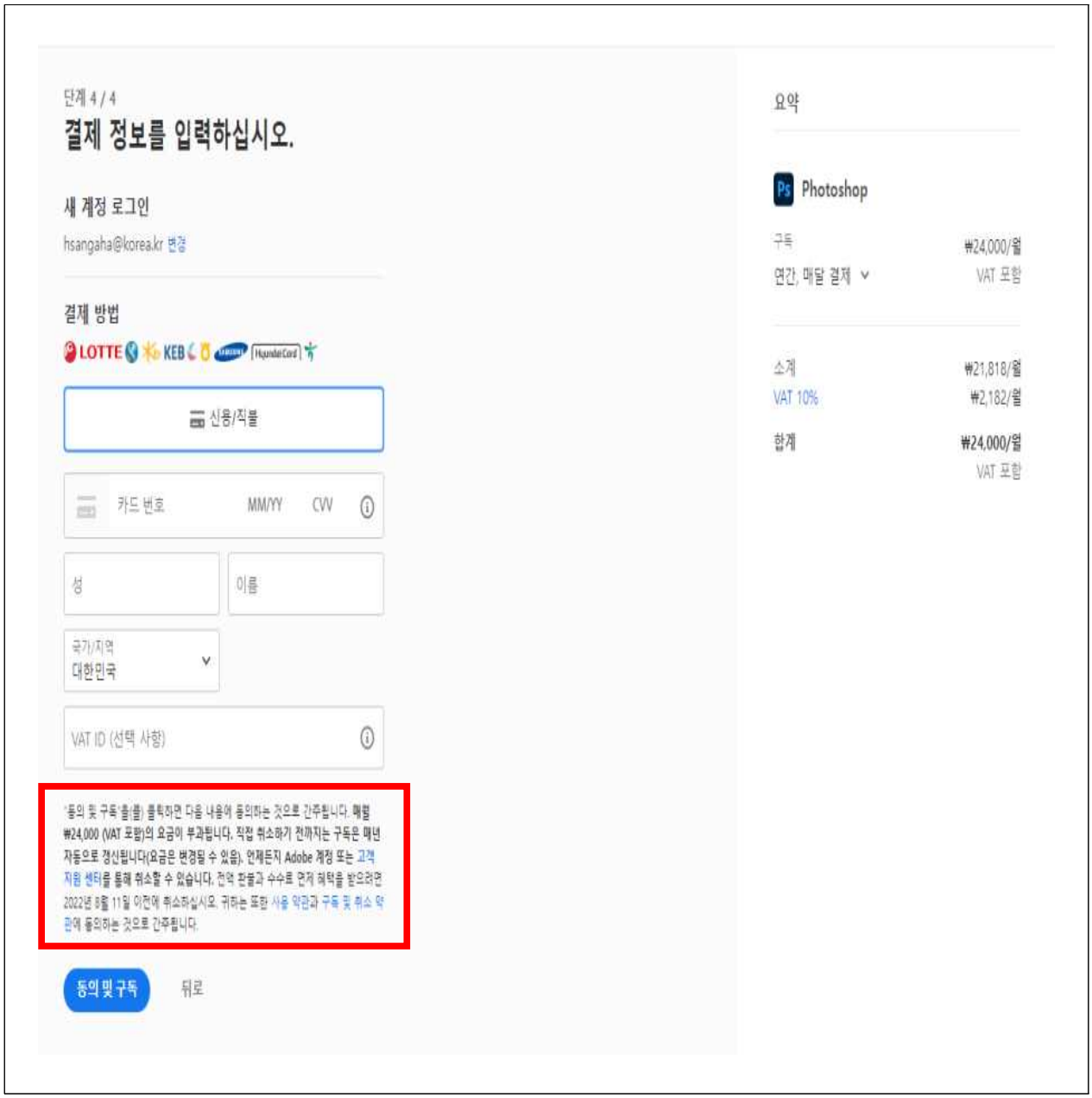

9 이 중 화면에 나타난 문구 중 파란색의 '구독 및 취소 약관'을 클릭하면 "취소 약관 : 언제든지 Adobe 계정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초 주문 후 14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14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약정 의무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일시불로 부과되며 서비스는 해당 월의 결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됩니다."라고 고지하고 있다.

<증적자료3> 포토샵의 가입자 결제정보 단계 온라인 화면(캡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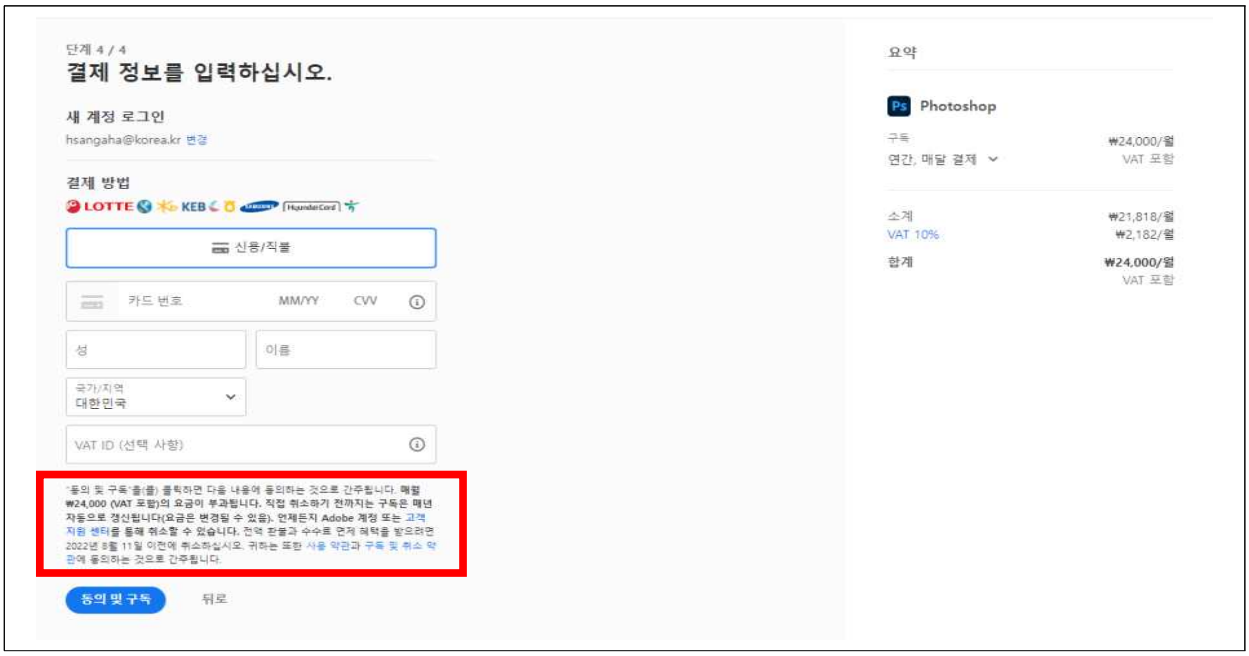

이용자가 화면 좌측의 문구 중 파란색의 '구독 및 취소약관'을 클릭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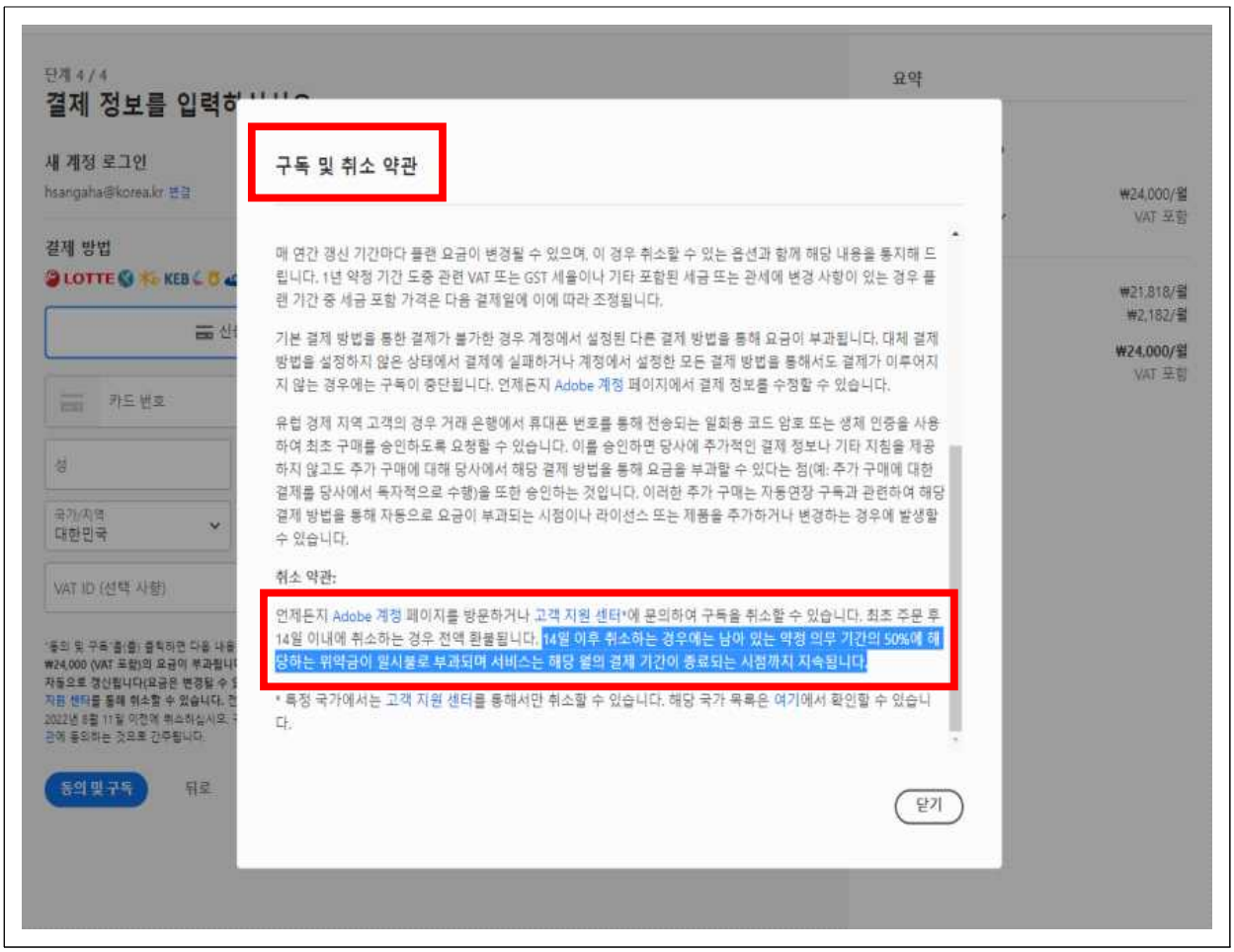

2) 월간약정(월 단위로 요금 납부)

10 피심인은 계약 14일 이후 중도에 해지하면 계약 당시 선(先)납부한 금액의 환불이 불가함에도 온라인 웹의 계약 체결 초기 화면에는 “언제든지 취소 가능, 수수료 없음 ⓘ”로 고지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화면의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14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서비스는 해당 월의 결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됩니다”가 나타나도록 하여 14일 이후의 환불 불가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증적자료4> 포토샵 월간약정의 온라인 이용계약 화면(캡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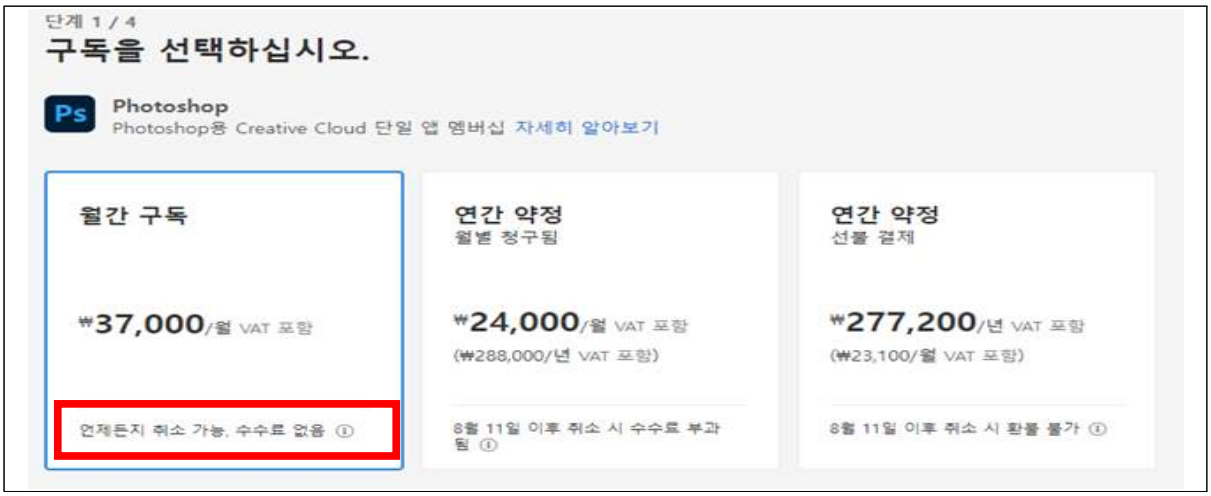

이용자가 ‘언제든지 취소가능, 수수료 없음 ⓘ’의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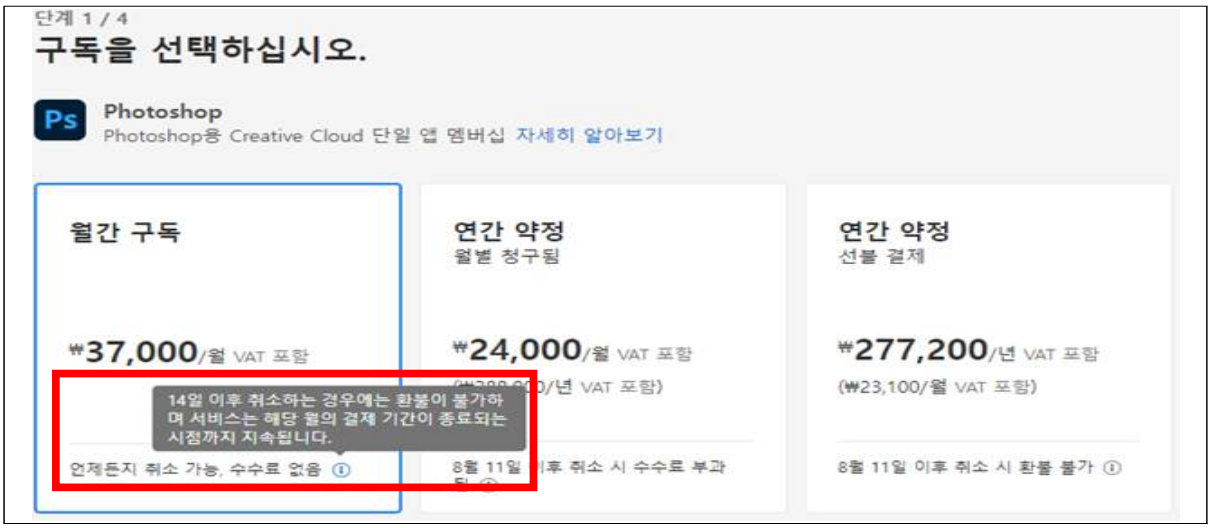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 제안·부과로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1) 위약금 규모 및 계약 취소[12] 현황

11 계약 14일 이후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되는 연간약정 월별청구 상품의 국내 이용자에게 조사대상 기간인 '19. 1.29.부터 '22. 6.30.까지 피심인이 부과한 위약금은 총 원(건)으로 해당기간 월평균 % 증가하였다.

<표6> 연간약정 월별청구 연도별 위약금 부과[13]액('19. 1.29. ~ '22. 6.30.)

(단위 : 천원)

구분	'19. 1.29. ~ '19.12.	'20. 1. ~ '20.12.	'21. 1. ~ '21.12.	'22. 1. ~ '22. 6.	합 계	비고 (연평균 증감)
연도별 위약금						
(월평균)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또한, 조사대상 기간 중 국내 이용자의 월간약정 및 연간약정 선불결제 계약 취소 건수는 총 건으로 해당기간 월평균 % 증가하였다.

<표7> 연도별 계약취소 건수[14]('19. 1.29. ~ '22. 6.30.)

(단위 : 건)

구분	'19. 1.29. ~ '19.12.	'20. 1. ~ '20.12.	'21. 1. ~ '21.12.	'22. 1. ~ '22. 6.	합 계	비고 (연평균 증감)
연도별 건수						
(월평균)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 계약 취소가 이루어진 건수임(14일 이전과 이후 모두 포함)
13)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위약금에서 실제 청구에 의해 환불된 금액이며, 모바일 앱은 연간약정 월별청구를 판매하지 않아 온라인 웹만 해당
14) 소명

2) 위약금·환불 관련 민원 현황

13 피심인은 국내 이용자 대상 고객지원센터를 '20.4월부터 운영[15]하여 '22.6월말까지 총 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중 %인 건이 취소 수수료 면제 및 환불 관련 등 위약금 부과와 환불 관련으로 '22. 6월말(누계 기준) 국내 전체 구독 건의 약 %를 차지하고 있다.

<표8> 국내 고객지원센터의 연도별 민원접수 현황('20. 4월~'22. 6월말)

(단위 : 건)

구 분	'20. 4.~12.	'21. 1.~12.	'22. 1.~6.	합계	비고 (점유)
취소수수료 면제 및 환불 관련					
트러블 슈팅 관련[16]					
빌링 관련[17]					
이용자 계정 관련[18]					
기타[19]					
합계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이며, ( )는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위약금 부과 건수임

<표9> 약정별 및 국내 구독건수 현황(누계)

(단위 : 건)

구 분			'19.12.	'20.12.	'21.12.	'22. 6.	비고 (연평균증감)
국내	월간약정						
	연간 약정	월별청구					
		선불결제					
	합 계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15) 어렵다고 소명

16) 제품의 에러나 사용 중 문제해결 요청
17) 결제 관련 문의, 결제 금액 확인, 결제 카드 변경 등
18) 어도비 계정 확인, 계정 생성, 로그인 에러 등의 문의
19) 구매 관련 등 문의

14 또한, 같은 기간 취소수수료 면제 및 환불 관련 민원 건은 매년 월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10> 취소수수료 면제 및 환불 관련 민원 현황('20. 4월~'22. 6월말 기준)

(단위 : 건)

월별	'20.4.~12.	'21.1.~12.	'22.1.~6.	비고(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자료 출처 : 어도비 제출 자료이며,, ( )는 연간약정 월별청구 관련 위약금 부과 건수임

15 일부 인터넷 포털 등에서 피심인을 검색하면 해지 관련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와 관련 언론 보도가 나타나고, 피심인에 대한 첫번째 연관 검색어가 '결제 취소'로 나타났다.

<증적자료5> 환불 관련 주요 언론보도 및 포털 연관검색어 화면

출처	주요 내용	연결 주소(링크)
포 털 블로그	(2021.10.11.) 어도비 위약금 없이 플랜 취소하기! 어도비 부들부들	https://blog.naver.com/aloahjisun/222533423319
	(2022.12.17.) 어도비 결제 취소 위약금 없이 빠르게 해지하기, 프리미어 프로 해지	https://blog.naver.com/dltngus1515/222958279116
언론 보도	(2020.04.30.) 포토샵 구독서비스 과금 논란……… 1주 무료 체험, 환불 요청하니, "위약금 12만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9/202004290398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22.10.27.) 어도비, 韓 소비자 뒷전…구독 해지 시 미국에 직접, 영어로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58
포털 연관 검색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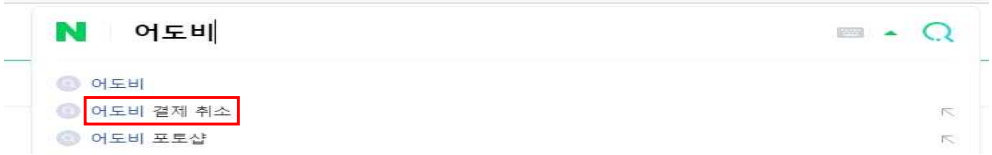	

4. 위법성 판단

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

1)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서비스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2) 위법성 판단

16 법원은 중요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이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약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 고지[20]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5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4〕5의2 - 나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등 약정 조건의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약금 및 환불 관련 사항은 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설명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17 또한,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계약 체결 온라인 초기화면에 14일 이후인 "OO월 OO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로만 고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총 4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구체적인 50% 위약금 부과와 환불 불가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고지하고 있는 것은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은 계약 14일 이후 중도 해지 시에는 요금 환불이 불가함에도 '월간약정'의 경우에는 온라인 웹의 계약 체결 초기 화면에 "언제든지 취소가능, 수수료 없음 ⓘ"로 고지하여 환불 가능 시점 14일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이용자가 화면의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 "14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서비스는 해당 월의 결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됩니다"로 환불 가능 시점은 고지하고 있다.

18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이용자의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위약금 및 요금 환불에 대한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5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4〕5의2

20) 대법원 판례(2007마1328결정, 2008.12.16.) -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호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1)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2) 위법성 판단

19 피심인과 유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턴(보안프로그램), 한글과컴퓨터(소프트웨어), 밀리의 서재(전자책), 디즈니플러스(OTT) 등은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시 별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잔여약정 의무기간 요금의 50% 위약금을 부과하는 피심인의 행위는 유사 업계의 일반적인 상관행 또는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20 또한, 피심인은 이용자가 '포토샵' 서비스의 '연간약정 월별청구'를 계약 14일 이후 1개월 이내 중도에 해지하면 132,000원을 위약금으로 부과하여 월간 이용금액(1개월) 24,000원 대비 약 550%의 부담이 발생하도록 책정하고, 계약 7개월 이후 8개월 이내에는 48,000원을 위약금으로 부과하여 이용자에게 월간 이용금액(8개월) 192,000원 대비 약 25%의 경제적 부담이 추가로 발생되도록 책정하고 있다.

<표11> 포토샵의 월간 이용요금 및 해지 기간별 위약금 비교

(단위 : 원)

약정해지 기간별	월별 납부액	위약금	
		부과액	비율(%)
15일~1개월	24,000	132,000	550.0
1~2개월	48,000	120,000	250.0
2~3개월	72,000	108,000	150.0
3~4개월	96,000	96,000	100.0
4~5개월	120,000	84,000	70.0
5~6개월	144,000	72,000	50.0

약정해지 기간별	월별 납부액	위약금	
		부과액	비율(%)
6~7개월	168,000	60,000	35.7
7~8개월	192,000	48,000	25.0
8~9개월	216,000	36,000	16.7
9~10개월	240,000	24,000	10.0
10~11개월	264,000	12,000	4.5
11~12개월	288,000	-	-

21 피심인의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약정기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라는 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1]에 따른

21) 방판법 제2조(정의)제10호.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해지권이 적용되고 과다한 위약금 부과도 제한되며,「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른「소비자 분쟁해결기준」22)은 인터넷콘텐츠업, 모바일콘텐츠업 등의 경우 계약 해지 시 잔여약정 의무기간의 해당요금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 주도록 제시하고 있고, 국내 위약금 산정기준23)이 최대 계약대금의 20%인 것에 반해 피심인은 5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22 아울러, 피심인의 제공 서비스는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이용자 증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거의 없고, 신규자 유치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방해나 제한을 하지 않으며 계약 기간 중도 해지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판매 기회를 상실하거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피심인에게 초래하는 불이익이 없거나 크다고 할 수 없음에도 계약 해지로 인해 피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비용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을 책정·부과하고 있다.

23 피심인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설명하면서 50% 위약금 부과는 '15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판례와 국내 이용자 유치 비용을 감안24)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판례는 미국 캘리포니아「민법」제1671조가 계약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따른 판결로, 이와 달리 국내「민법」제398조는

22)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o. 인터넷 콘텐츠업 및 모바일콘텐츠업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 고
5)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o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o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	

23) 공정거래위원회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계속 거래 등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

업 종	구 분	위약금 기준
국내결혼 중개업	서비스 개시 전	총계약 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	총계약 대금의 20%×(잔여횟수/총횟수)

24) 피심인은 '22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은 미화 20달러이나. 표준운영 비용(standard operating cost)를 제외하면 월평균 ARPU는 미화 약 12.1달러로 국내 이용자 1인 유치비용으로 72달러를 지출하는데 이는 평균적인 국내 이용자의 약정 기간 중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익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허용하고 있어 법률 체계에 서로 차이가 있는 점,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25]이 피심인에게 있으나 국내 이용자 유치 비용과 50% 위약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표12> 미국과 국내 민법의 관련 조항 비교

구분	주요 내용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 제1671조[26]	(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d)의 세부규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1) 당사자의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을 위해 자산 또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임대 계약의 당사자 (2) 당사자 또는 부양을 위해 당사자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거주지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임대 계약의 당사자 (d). (c)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무효로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실제 손해액을 결정하기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위약으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	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25) '정당한 사유'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5.11. 선고 2015두38252)

26) California Civil Code §1671.

(c) The validity of a liquidated damages provision shall be determined under subdivision (d) and not under subdivision (b) where the liquidated damages are sought to be recovered from either:

(1) A party to a contract for the retail purchase, or rental, by such party of personal property or services, primarily for the party's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 or

(2) A party to a lease of real property for use as a dwelling by the party or those dependent upon the party for support.

(d) In the cases described in subdivision (c), a provision in a contract liquidating damages for the breach of the contract is void except that the parties to such a contract may agree therein upon an amount which shall be presumed to be the amount of damage sustained by a breach thereof, when, from the nature of the case, it would be impracticable or extremely difficult to fix the actual damage.

24 피심인은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50% 위약금 부과와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환불 불가 이용약관 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6조[27], 제8조 등에 따른 ‘약관무효’에 해당되어 ’22.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28] 조치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조사기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밝힌 것은 피심인 스스로 환불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29]을 제한한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또한, 이용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는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민법」 제550조에 규정되고 있고, 피심인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는 별도 법률이나 규정이 없고, 이용자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0]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 즉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50%의 과도한 위약금을 이용자에게 제안·부과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해지권 행사를 제약받아 언제든지 쉽게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지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26 피심인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20. 4월부터 ’22. 6월말까지 접수한 전체 민원 건 중 %인 건의 위약금 및 환불 민원은 ‘22. 6월말 기준 국내 전체 구독 수 건의 약 %에 해당하여 50% 위약금 부과와 선(先)납부액 환불 불가로 인해 해지권 제한의 영향을 받는 범위가 상당히 크며,

27)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8)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요금을 전혀 환불하지 않거나,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만 환불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임

29) 계약당사자의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로 약정해지권(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생기는 계약 해지권)과 법정해지권이 있음

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7 ‘19. 1.29.부터 ’22. 6월말까지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국내 이용자 대상 위약금 부과건수가 월평균 % 증가하고, 환불 불가 건수는 월평균 %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 할 것이다.

28 따라서, 피심인이 계약 14일 이후 중도에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잔여 약정 의무기간 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과도하게 제안・부과하는 행위와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계약 체결 시 일시불로 선(先)납부한 연간 요금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 행위는 약정 기간 중에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운용하여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별표4] 5 - 나- 10)목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5. 피심인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가. 계약 체결 시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 미고지 관련

29 피심인은 이용계약 체결 14일 이후 해지 시 ‘월간약정’의 환불 불가 사실과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잔여약정 의무기간 해당 이용요금의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구독 및 취소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고 하나, 위약금 부과와 환불 관련 사실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용자에게 충실히 고지해야 하므로 피심인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

30 또한, ‘월간약정’의 “언제든지 취소 가능, 수수료 없음”은 환불 요청 기한과 무관하게 이용자가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하여 갱신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구독 유형 선택·결제화면 등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고 하나, ‘월간약정’은 계약 14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함

에도 온라인 화면의 계약 초기 화면에는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로 고지한 후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야만 계약 14일 이후에 환불 불가 사실을 알 수 있게 한 것은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 제안·부과 등 해지권 제한 관련

31 피심인은 연간약정(2개) 상품은 요금 할인에 따른 이용자 혜택이 있고 실제 위약금 부과 건수는 미미하며 민원 건수 등은 주관적 척도에 불과하여 이용자 이익 저해 현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이용요금의 할인 혜택 및 위약금 부과 건수 이외에 피심인 행위로 인해 국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는 상당히 크다는 점과 국내·외 유사 서비스와 비교, 위약금 규모의 과도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 약관 심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2 계약기간 중도 해지 시 잔여약정 의무기간의 50%인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선(先)납부한 연간 이용요금의 전액 환불 불가 방식은 약정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운용하여 해지권을 제한하고, 언제든지 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것으로 피심인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

6.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33 피심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나.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34 피심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웹 'adobe.com' 및 모바일 앱의 계약 초기 화면에 해지 관련 환불 시점과 구체적인 위약금 부과액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 또는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계약 해지 시 잔여약정 의무기간 요금의 50%로 과도하게 부과하는 위약금을 낮추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 '연간약정 선불결제' 계약 해지 시 일시불로 납부한 이용금액의 전액 환불 불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다.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35 피심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5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나.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 온라인 'adobe.com'(PC 웹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 포함)의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표13 > 공표 문안(예시)

○○○○○(회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여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와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의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회사) ○○○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36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나. 다.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37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근거

38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6],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3호)에 따라 피심인이 이용자와의 이용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별표4] 5-나-10)목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이하 "위반행위①")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39 이용계약 체결 시 위약금 등을「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5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4〕5의2 - 나호에서 규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이하 "위반행위②")에 대한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나.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 금액

1) 과징금 부과 상한액

40 피심인의 위반행위①(해지권 제한)과 위반행위②(중요사항 미고지)에 대한 각각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별표6],「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3호)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2) 기준 금액

4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3호) 제6조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경우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 행위로 인해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되, 서비스의 범위는「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위반행위가 해당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그 영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42 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①(해지권 제한), 위반행위②(중요사항 미고지)와 관련한 매출액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19. 1.29.부터 '22. 6.30.까지의 금지행위 위반기간 동안의 전체를 매출액으로 한다.

<표14> 최근 3개연도 연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간)	'19. 1.29. ~ '19.11.29.	'19.11.30. ~ '20.11.27.	'20.11.28. ~ '21.12. 3.	'21.12. 4. ~ '22. 6.30.	합 계 (3년 6개월)
매출액 (원화)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9년말부터 '21년말까지 연말 결산일은 단위로 결산 마감

43 아울러,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3호) 제4조제1항[별표1]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피해 중대성 및 범위, 이용자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표15> 기준금액 부과기준율 및 중대성 정도 판단 시 고려 사유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2~3%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1~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1%이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3호) 제4조제1항 [별표1]

< 위반행위 ① - 해지권 제한 >

44 피심인은 이용자의 민원 제기 시 이용요금을 환불[31] 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과 위반행위 기간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19. 1월 이후 5년 이내로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위반행위 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인 원의 부과 기준율인 %를 적용하여 원을 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1) 피심인은 "취소수수료 면제 및 환불 관련" 민원 215,257건 중 약 99%인 213,400건은 이용자가 고객지원 센터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대부분 환불을 하였다고 주장

< 위반행위 ② - 중요사항 미고지 >

45 피심인은 50% 위약금 부과 사실과 환불 시점을 이용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실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위반행위 기간 동안 전체 매출액인 원의 부과 기준율 %를 적용하여 원을 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다. 필수적 가중·감경

46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3호)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①, ② 모두 위반기간을 12개월 초과하여 기준 금액의 %를 가산하고,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기준 금액의 %를 각각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감경

47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3호) 제8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 가중·감경이 가능하나, 위반행위①, ② 모두 인정되는 사유가 없다.

마. 최종 과징금 부과액 결정

48 피심인의 위반행위①(해지권 제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친 원이나,「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46조제1항[별표6]은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3개 직전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원)인 100분의 1(원)로 규정하고 있어 원을 과징금 부과액으로 결정하고,

49 위반행위②(중요사항 미고지)의 과징금 부과액은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친 원으로 결정하여 총 원을 최종 과징금 부과액으로 결정한다.

< 표16 > 과징금 산정 세부 내역

위반행위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과징금 부과액	최종 과징금
위반행위 ① (해지권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13억 9백만원
위반행위 ② (중요사항 미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					

8. 결 론

50 위 피심인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51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3조부터 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1월 29일

위 원 장 이 동 관 (인)

부위원장 이 상 인 (인)

Ⅲ. 부 록

■ 방송·통신 금지행위 및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정

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2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3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

4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7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8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1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12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4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7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18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19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2008. 0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52호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개정 2011. 04. 2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27호
개정 2012. 11. 2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8호
개정 2015. 07. 3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07호
개정 2015. 10. 2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25호
개정 2016. 11. 17.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1호
개정 2019. 04. 3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 6호
개정 2022. 03. 1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 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면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는 10억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는 8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영 별표 6 2. 나. 1). 가)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 영 별표 6 2.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의 영향, 소비자 피해 정도 등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제5조(위반기간의 산정) 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통신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통신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련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매출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 또는 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 수와 1가입자당 해당 서비스의 월평균 매출액, 해당 서비스 가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그 영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손해가 없고 이용자에게만 손해가 미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서비스로 볼 수 있다.

④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별표 6 2.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영업중단,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 사업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서비스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서비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7조(필수적 가중·감경) ①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감경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다만,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8조(추가적 가중·감경)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금지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8-52호, 2008.5.19.>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4항 위반행위에 대한 특칙) 법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4항 위반행위에 대한 제7조제1항 및 별표 3 Ⅱ.1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의 횟수 가중은 2006년 3월 27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2007년 6월 17일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제2009-27호, 2009.11.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1-27호, 2011.4.29>

이 고시는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98호, 2012.11.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7호, 2015.7.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25호, 2015.10.21>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11호, 2016.11.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9-6호, 2019.04.30.>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2-3호, 2022.03.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제4조제1항 관련)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
중대한 위반행위	1~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이내

비고 :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별표 2]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제4조제2항 관련)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3억원 이하

[별표 3] 필수적 가중·감경 금액(제7조제1항 관련)

Ⅰ. 금지행위 위반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Ⅱ. 금지행위 위반의 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1.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과거 위반행위 중 3회 위반행위부터 위반행위 1회당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별표 4]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제8조 관련)

Ⅰ. 일반원칙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Ⅱ 및 Ⅲ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Ⅱ. 가중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리하는 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용자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Ⅲ. 감경 사유 및 비율

1.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2. 위반 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내지 50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이내
5. 위반전기통신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속 임원·종업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리하는 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7.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경우 100분의 30 이내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정 2011.04.2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8호
개정 2012.01.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 5호
개정 2013.06.14.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13호
개정 2014.09.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13호
개정 2014.11.2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21호
개정 2015.07.3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12호
개정 2017.01.1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 2호
개정 2017.03.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 3호
개정 2019.01.02.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 1호
개정 2020.08.0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 5호
개정 2021.05.26.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 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IPTV법"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2. 「방송법」 제76조의3, 제85조의2
3. IPTV법 제17조
4.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5.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장 사실조사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① 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별지서식)와 금지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피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3. 금지행위의 내용
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실·국은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에 따른 금지행위 소관 국(이하 "해당 국"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을 제출 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의 경험이 없는 사업자나 중소사업자, 일반이용자가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사실조사의 착수) ① 해당 국의 국장(이하 "해당 국장"이라 한다)은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사건 중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할 해당 국 소속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사건의 단서, 사건의 개요, 관계법령 및 조사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사건의 관리) ① 금지행위 사건은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류 중인 사건현황, 기결 사건현황 및 처리지연 사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건번호는 금지행위사건을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기재하여 부여한다.

1. 조사착수년월
2. 금지행위 사건임을 나타내는 문구
3. 접수일련번호

④ 사건의 명칭은 협정체결거부, 협정불이행, 정보유용, 부당요금산정, 이용약관위반, 이용자이익저해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내용을 일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 제출명령) ① 위원회는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제3항, 제85조의2제4항, 단말기 유통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64조,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한다.

1.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2. 자료를 제출할 자
3. 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4. 제출기한과 장소
5. 제출방식
6.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③ IPTV법 제17조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7조(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 ①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 단말기 유통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64조,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한다.

1. 사건명 및 출석대상자의 성명
2. 출석일시 및 장소

③ 조사관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확인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2. 확인일시 및 장소
3. 확인내용
4. 확인자의 의견

④ 조사관은 제3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는 확인자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오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확인자와 조사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⑤ 「방송법」 제85조의2, IPTV법 제17조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

제8조(현장조사) ① 조사관은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제3항, 단말기유통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3항,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해당 국장의 승인을 얻어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을 입회시킨 후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조사 장소, 조사일시, 조사 내용, 제출 또는 수령할 자료나 물건의 목록, 조사관 및 관계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오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관계인과 조사

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방송법」 제85조의2, IPTV법 제17조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의2(조사의 처리기간) 조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단서
2. 조사경위
3. 피인지인의 주장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판단
6. 조사관 의견

제10조(조사절차의 종결 등) ① 사무처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실판단에 오인이 있거나 조사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는 조사관에게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제9조에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피인지인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조사단계에서 피인지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부도, 일시적 폐업, 도피 등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의 경우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인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실질적인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 후단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본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실질적인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단말기 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유통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1. 동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고, 금전적, 절차적 주의·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교육·검증·관리·평가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2. 기타 제1호에 준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한 경우

제3장 시정조치안의 작성

제12조(시정조치안의 작성) ① 해당 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정조치안에는 진술서, 확인서, 기타 증거자료(이하 "증거자료"라 한다)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정조치안의 시정조치내용은 금지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방송법」 제76조의3제2항, 제85조의2제2항, IPTV법 제26조, 단말기 유통법 제14조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제2항 및 단말기 유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④ 해당 국장은 시정조치안 작성시 "이는 ○○○국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 한다"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늦어도 의견진술지정일 10일(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5일) 이전까지 피심인에게 시정조치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피심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피심인이 제3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시정조치안의 증거자료 열람·복사등) ① 피심인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송달받은 때에는 증거자료를 특정하여 위원회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인정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서, 영업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보호, 기타 공익상 열람·복사를 허가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삭제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의 의결

제15조(시정조치안의 보고 등) ① 해당 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진술내용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안건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심의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준비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6조(시정조치안 의결) ① 위원회는 상정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검토보고,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진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며 기타 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경고) ① 위원회는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② 경고를 의결한 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제2항 및 단말기 유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시 가중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제18조(재조사) 위원회는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 조사관의 조사종결이 있은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조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절차종료) 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으로 원 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무혐의) ① 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제21조(사건종결처리)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사건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중지) 위원회는 피심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부도, 일시적 폐업, 도피 등 심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서의 작성과 통지) ①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고 신고인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피심인
3. 주문
4. 이유
5. 의결년월일

②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시정조치

제2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에게 통지할 때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금지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피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명령이행여부 확인) 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이의신청

제26조(이의신청)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제2항 및 단말기 유통법 제15조에 의한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당사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서류의 심사결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6조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는 제4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8조(재결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해 재결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안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조사 관련 공무원은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물론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0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1-28호, 2011.4.29>

이 고시는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5호, 2012.1.30>

이 고시는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3-13호, 2013.6.14>

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13호, 2014.9.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21호, 2014.11.28>

이 고시는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12호, 2015.7.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2호, 2017.1.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3호, 2017.3.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9-1호, 2019.1.2.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5호, 2020.8.5.>

이 고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1-4호, 2021.5.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5">신고인</td><td>성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rowspan="2">사업자인 경우</td><td>사업자명</td><td></td><td row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rowspan="2"></td></tr>
<tr><td>대표자 성명</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전화번호(*)</td><td></td><td>휴대폰</td><td></td></tr>
<tr><td>팩스번호</td><td></td><td>이메일</td><td></td></tr>
<tr><td rowspan="4">피신고인</td><td>사업자명(*)</td><td colspan="2"></td><td>대표자 성명</td><td></td></tr>
<tr><td>주소 또는
전화번호(*)</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td><td>판매자 성명</td><td></td></tr>
<tr><td>홈페이지 주소</td><td colspan="4"></td></tr>
<tr><td>신고내용(*)</td><td colspan="5">☞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증거자료</td><td colspan="5">[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td></tr>
<tr><td>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td><td colspan="5">[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td></tr>
</table>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3.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 2017. 18. 16.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7-4호
개정 2021. 09. 2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위주체 및 상대방) ①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②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해당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다른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부당성 판단기준) ①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
   가. 행위주체가 부과한 조건 또는 제한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곤란하게 하여 이용자 선택권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나. 행위주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를 현저히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한, 차별하여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 여부
2.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여부
   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다.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

3.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

가. 이용약관 등을 통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 또는 이용의 제한 정도

나.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등이 상당히 저해되는지 여부

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2. 통신장애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한정된 기간동안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4. 행위주체가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위해 사회 통념상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경우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7-4호, 2017.8.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1-9호, 2021.9.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2016. 11. 17.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2호

제1조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관련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기간 산정) 위반행위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① 이행강제금은 제2조의 관련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 초과 ~ 1천분의 3 이하
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초과 ~ 1천분의 2 이하
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이하

②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유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심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2.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불이행기간 산정 방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 세부조치 중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세부조치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전항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시정조치명령의 경우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8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중지 및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11호, 2016.11.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방송통신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 건	
당 사 자	
시정조치명령 내 용	
이행기일	
불 이 행 내 용	
부 과 예 정 일	
비 고	

귀하(업체)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년 월 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조사관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2 >

이의제기서

사 건		
이의신청인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사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은 20 . . . 귀 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별지]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o 이의제기 취지

o 이의제기 이유

210㎜×297㎜(백상지 80g/㎡)

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제정 2008.05.29.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1호
개정 2009.11.02.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61호
개정 2010.12.08.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74호
개정 2012.10.15.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27호
개정 2015.10.21.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02호
개정 2022.03.11.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29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호 내지 제11호의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 위반 및 제52조제1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법 제99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고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기준) ① 금지행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다수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고발할 수 있다.

1. 동일한 유형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를 수회 받았으나 금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행정처분만으로는 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수회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등 관련 법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지행위 위반의 내용이 고의적인 반사회적 행위이거나 이로 인하여 침해된 이용자의 이익이 심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지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지행위를 행한 지역, 기간, 횟수, 동기, 금지행위로 인한 수익 등 거래가액,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 수 등 거래상대방의 수, 금지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및 전기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이익의 침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진술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에는 관계인등에게 회의의 일시·장소·상정사항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11호, 2008. 5.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61호, 2009. 11. 2.>

이 훈령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4호, 2010. 12.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7호, 2012. 10. 15.>

이 훈령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호, 2015. 10. 21.>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29호, 2022. 3. 11.>

이 훈령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정 2011.04.2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29호
개정 2012.11.2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9호
개정 2014.09.3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14호
개정 2015.07.3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개정 2022.06.0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에서 정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일간지"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2. "지방일간지"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일간신문 중 서울을 제외한 특정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3.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말한다.
4. "기타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월 1회 이하로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공표요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거나 또는 예방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공표의 객체 등) ①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 또는 사업장(피심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 등 포함), 인터넷, 잡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거나 우편으로 고지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또는 고지는 피심인별로 시행하되,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피심인은 공표내용을 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신문, 잡지 등 공표

제5조(공표할 신문의 선정) ① 위원회는 법 위반행위로 인한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중앙일간지(전판)(법 위반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사건의 경우)나 지방일간지(전판)에 게재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건 의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급하여(이하 "최근 1년간"이라 한다.) 피심인의 신문광고 횟수 또는 광고비 지출이 가장 많은 일간신문(전판)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위반행위가 특정 신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신문(전판)에 게재하도록 한다.

② 피심인이 공표할 신문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고, 나머지는 피심인이 선택(전판)할 수 있다. 신문광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피심인이 게재 신문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위반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건은 피심인의 소재지를 발행대상지역으로 하는 지방일간지(전판)에 게재토록 하되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④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특성상 특정계층을 상대로 한 신문, 전문지(예 : 전자신문, 정보통신신문 등), 영자지, 주간지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지 등에 게재토록 할 수 있다.

제6조(공표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토록 한다.

제7조(게재면) ① 신문의 게재면을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토록 하되, 법 위반행위로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 하도록 한다.

② 스포츠신문인 경우에는 2면, 3면, 또는 사회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면 또는 3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제8조(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① 원칙적으로 공표문안 및 크기를 다음과 같이 별표 표준 공표문안 및 활자크기에 따르도록 한다.

② 공표제목에는 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용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장 또는 대리점 및 판매점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명과 병기) 및 법 위반행위의 유형이 명백히 표현되어야 한다.

③ 공표내용에는 당해 법 위반행위와 시정명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 위반행위, 피심인의 회사명 및 대표자, 위원회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활자를 고딕체로 하며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크기 및 매체수) ①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법 위반행위의 경중, 법 위반행위의 상습성 여부, 피심인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4종류(4단×10cm 또는 5단×9cm, 4단×15cm 또는 5단×12cm, 4단×18.5cm 또는 5단× 15cm, 5단×18.5cm)로 차등을 둔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표크기를 5단×37cm까지 할 수 있다.

③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
o 3회미만	4단×10㎝ 또는 5단× 9㎝ 이상	1개 이상	1회 이상
o 3회이상 5회미만	4단×15㎝ 또는 5단×12㎝ 이상	2개 이상	1회 이상
o 5회이상 7회미만	4단×18.5㎝ 또는 5단×15㎝ 이상	3개 이상	1회 이상
o 7회이상	5단×18.5㎝ 이상	4개 이상	1회 이상

제10조(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이 게재된 신문 등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잡지 등 공표) 법 위반행위가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잡지 기타 간행물에 공표토록 한다. 잡지 기타 간행물 공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사업장, 대리점 및 판매점 공표

제12조(공표대상 및 장소) ① 피심인의 당해 법 위반행위가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표장소는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과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제13조(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원칙적으로 별표 표준공표문안 및 활자 크기를 적용한다.

제14조(공표기간 및 공표크기) ① 공표기간, 공표크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법 위반행위의 경중, 법 위반행위의 상습성 여부, 피심인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7일~30일)로 차등을 둔다.

③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한다.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	공표기간(휴업일제외)
o 3회 미만	7일이상 10일미만
o 3회 이상~6회 미만	10일이상 15일미만
o 6회 이상	15일이상 30일이내

제15조(공표방법 등) ① 당해 공표장소에 공표문을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공표하게 하되,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공표문에 부착해야 한다.

② 피심인에게 공표문의 무단변경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결내용과 함께 통지한다.

제16조(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사업장 또는 대리점 및 판매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또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공표된 공표문 사진제출 등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인터넷 등 온라인 공표

제17조(공표대상 등) ① 위원회는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매체 또는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 별표와 같은 형식의 공표문안을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문서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2일~10일)로 차등을 둔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	공표기간 (휴업일 포함)
o 3회 미만	2일이상 5일미만
o 3회 이상~6회 미만	5일이상 7일미만
o 6회 이상	7일이상 10일이내

제18조(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표문이 게재된 공지란, 홈페이지 등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복사본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기타 공표방법은 신문, 사업장, 대리점 및 판매점 공표를 준용한다.

제5장 우편에 의한 고지

제20조(고지방법 등) ① 위원회는 손해배상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개별 이용자에 대하여 우편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을 고지토록 할 수 있다.

② 우편에 의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요금청구우편물 등 통상의 우편물과 구별되는 별도의 고지문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고지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발송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고지크기는 A5규격(14.8㎝×21㎝)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고지문의 발송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수, 우송대상자 수를 명시하고 고지문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물 접수영수증 사본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기타 공표방법은 신문, 사업장, 대리점 및 판매점 공표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1-29호, 2011.4.29>

이 고시는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99호, 2012.11.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14호, 2014.9.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15호, 2015.7.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2-10호, 2022.6.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표준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1. 표준공표문안

공표제목	**(주)00은 00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공표내용	저희 회사**(000)**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000기간중의 000, 000행위가 00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공표일시	2000년 0월 00일
공 표 자	**대표이사 0 0 0**

2. 활자(또는 글자)크기

구분/활자크기	공표제목	공표내용	공표자
신문공표			
5단×37cm	42P 이상	22P 이상	31P 이상
5단×18.5cm	31P 이상	14P 이상	22P 이상
4단×18.5cm 또는 5단×15㎝	26P 이상	12P 이상	18P 이상
4단×15cm 또는 5단×12㎝	22P 이상	11P 이상	16P 이상
4단×10cm 또는 5단×9㎝	18P 이상	11P 이상	14P 이상
사업장공표			
A2 사이즈 (42㎝×59.4㎝)	2.5㎝×3.5㎝이상	2.0㎝×2.5㎝이상	2.5㎝×3.5㎝이상

7.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2019. 3. 6.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마목 1)·3)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2.「방송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을 말한다.
2. “현금 외 경품 등”이란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3. “약관 외 요금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감면액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4.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입·임대·설치 등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제4조(위법성 판단기준) ①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인지 여부는 현금 제공여부와 정도,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의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② 경제적 이익 등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음성적 제공 가능성, 가입자 유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제적 이익 등은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개별 이용자가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의 금액이 개별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별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평균 금액의 상하 15%이내인 경우
2.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변화, 시장 점유율, 공정경쟁 저해여부,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제5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4호, 2019.3.6.>

이 기준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정 2008. 0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9호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
개정 2011. 04. 2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6호
개정 2012. 11. 2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97호
개정 2015. 07. 3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06호
개정 2016. 04. 06.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02호
개정 2022. 07. 0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 및 아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표 2의2 IV.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이용자 또는 시청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합판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의 인식, 거래관행, 생산기술 및 판매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서비스 판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합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2. "동등결합판매"라 함은 이용약관(이용요금 포함)의 인가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간접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결합판매와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합판매를 말한다.
   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해당 인가 대상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합판매
   나.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해당 인가 대상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인가 대상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합판매

3.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라 함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것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설비요소 또는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가 서비스로서 동등결합판매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을 말한다.

제3조(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①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결합판매를 함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합판매상품 가입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결합판매에 의해서만 가입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나. 결합판매의 특정 구성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이라 함은 특정 구성상품 요금을 소요비용(제조원가, 매입원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보다 낮게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이용약관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이 경우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를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로 본다.
   마. 결합상품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바. 결합상품 청약 후 이용개시 전 이용자의 결합상품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사. 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결합상품의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일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계약서(가입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혹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기재·교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2. 결합판매상품 이용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서면동의 없이 계약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행위. 이 경우 서면동의는 이용자의 승낙하에 녹취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시 제공하기로 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청구서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이용자의 잔여 약정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자동 연장된 경우 해지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결합판매상품 해지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가. 서비스 불능지역으로의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나머지 결합상품의 계약 해지를 제한·금지하거나 나머지 결합상품에 대해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전목의 경우에 이용자가 결합상품 중 이용할 수 없는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결합상품에 대해 계속 이용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자가 해지한 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의 결합상품할인율을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는 행위. 단,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 남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이용자가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라.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마.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기간이 1년을 경과한 이후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4. 기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 사업자의 금지행위

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를 제공(해당 사업자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인가 서비스를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각 목에서도 같다)하는 경우,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결합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다.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간에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라.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 중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마.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제1항제1호, 「방송법」 제8조제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현저히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케 하여 결합판매를 함으로써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동등결합판매를 저해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저해효과를 고려한다.

제4조(비용절감효과의 심사)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개별적으로 판매할 경우와 비교하여 산정하며 결합판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설비통합이나 소프트웨어 통합,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 등에 의한 생산과정상의 비용 감소의 수준 및 정도
2. 공동마케팅, 해지율 감소 등에 의한 판매영업상의 비용 감소의 수준 및 정도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감소의 수준 및 정도

제5조(이용자편익 증대효과의 심사)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로 인한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는 결합판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이용조건상의 편익
2. 가입에 있어서의 편의성, 탐색비용의 절감 등 구매과정상의 편익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이용 편익

제6조(동등결합판매의 심사) ①제3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의 존재여부는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요소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 결합판매의 서비스 비용, 기능, 품질, 커버리지, 이용자 인식, 구성상품 등에 있어서 결합판매간 수요대체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설비 여유용량
나. 사업자의 필수요소와 관련된 투자 자본의 회수
다. 지적재산권의 존재여부
라. 이미 제공되어온 서비스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지 여부 등

제7조(개별서비스에 관한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가운데 개별서비스와 결합상품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이용자 이익 보호 관련 사항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제시한 개별서비스에 대한 고시를 결합판매에도 준용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49호, 2008.5.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7호, 2009.11.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26호, 2011.4.29.>

이 고시는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97호, 2012.11.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06호, 2015.7.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02호, 2016.4.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3호, 2022.7.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 2014. 09.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11호
개정 2017. 09. 2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 8호
개정 2018. 04. 1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8- 2호
개정 2021. 01.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 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번호이동 제한, 신규가입 제한, 기기변경 제한 등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2. 삭제
3.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4.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5.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6.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7.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제3조(긴급중지명령의 유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의 긴급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의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 지역·유통망·장려금을 세분화하여 할 수 있다.

제4조(긴급중지명령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제기의 대상
2. 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2항의 이의제기 결과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11호, 2014.9.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8호, 2017.9.28.>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호, 2018.4.10.>

이 고시는 201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1.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2014. 09.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12호
개정 2017. 09. 2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 7호
개정 2018. 04. 1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8- 3호
개정 2023. 04. 2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 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1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5항 또는 제9조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또는 제8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③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는 10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영 별표 2 2. 나. 1). 가)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 영 별표 2 2. 나. 1). 라)에 따른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 혹은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의 영향, 소비자 피해 정도 등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제5조(위반기간의 산정) 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통신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서비스・업종의 영위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통신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련매출액의 산정)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 또는 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 수와 1가입자당 해당 서비스의 월평균매출액, 해당 서비스 가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그 영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범위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⑤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손해가 없고 이용자에게만 손해가 미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⑧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별표 2 2.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자가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영업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를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업종의 영업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를 개시하였음에도 영업 또는 판매 중단, 영업 또는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영업 또는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업종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 사업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서비스·업종·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서비스·업종·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7조(필수적 가중·감경) ①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 범위, 감경의 경우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감경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다만,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 혹은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8조(추가적 가중·감경)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大韓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12호, 2014.9.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7호, 2017.9.28.>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호, 2018.4.10.>

이 고시는 201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호, 2023.4.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제4조제1항 관련)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 이상 4%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 이상 3%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 이상 2% 미만

비고 :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본질적 또는 장기적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별표 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 혹은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제4조제2항 관련)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3억원 이하

[별표 3]

필수적 가중·감경 금액(제7조제1항 관련)

Ⅰ. 위반행위 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Ⅱ. 위반의 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1.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과거 위반행위 중 4회 위반행위부터 위반행위 1회당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별표 4]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제8조 관련)

Ⅰ. 일반원칙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위반 사업자에게 다음 II 및 III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Ⅱ. 가중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 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용자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Ⅲ.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사실 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 이내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위반 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내지 50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이내
5. 위반 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속 임원·종업원, 대리점 또는 판매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 대한 교육, 자율준수 활동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가. 해당 교육, 자율준수 활동 등의 내용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내
   나. 해당 교육, 자율준수 활동 등의 내용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5 이내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가. 해당 조치로 위반행위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내
   나. 해당 조치로 위반행위 재발을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이내
   다. 해당 조치가 가 및 나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재발을 일정부분 방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10이내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11.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2014. 09. 3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개정 2016. 09. 27.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 6호
개정 2017. 09. 28.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7- 6호
개정 2021. 10. 2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10호
개정 2023. 12. 14.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3-0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말장치명 (펫네임포함)
2. 출고가, 지원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
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기간, 요금제 등 세부기준별로 제1항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공시장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 주기 및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일 전에 서면 또는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점・판매점 게시 내용 및 방법) ① 대리점 및 판매점은 판매하는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각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1항의 정보를 게시하는 서식은 별지 제2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영업장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편철 및 보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자료를 편철 또는 전자적 형태로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10호, 2014. 9.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6호, 2016. 9.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6호, 2017. 9.28.>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0호, 2021.10.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05호, 2023.12.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제정 2011. 12. 3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57호
개정 2014. 12. 3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5호
개정 2016. 12. 28.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제2항, 별표 2의2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수단의 확보 판단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 삭제 >

② 영 별표2의2 1.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중계방송권자등은 예상치 못한 경기 일정의 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6조제2항의 "국민관심행사등"의 해당행사가 개최되기 6개월 전까지 영 별표2의2 1.의 방송수단을 통해 시청이 가능한 가구수(이하 “가시청 가구수”라 한다)관련 방송권역, 타 방송사업자와의 송출계약 현황자료 등 가시청 가구수 확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이후에 방송권역, 송출계약 등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중계방송권자등은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시청 가구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중계방송권자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2항에 따른 가시청 가구수 관련 자료의 검증을 의뢰하여 통보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가시청 가구수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중계방송권자등이 제출한 검증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실시간 방송의무 예외사유) ① < 삭제 >

② 영 별표2의2 2.다.의 “국민관심행사등이 다수의 세부 행사로 구성되어 전체 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곤란”한 경우는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의 경우에는 하나의 경기가 종료된 후 2시간 이내에 다른 경기의 방송을 시작하는 경우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세부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1. < 삭제 >
2. < 삭제 >
3. < 삭제 >
4. < 삭제 >
5. < 삭제 >
6. < 삭제 >

제4조(중계방송권의 거래 거부 또는 지연) ① 영 별표2의2 3.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영 별표2의2 3.가.의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을 구매하려는 방송사업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란 구매자가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3개월(동·하계 올림픽이나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전까지 상당 기간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중계방송권 구매를 위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2. 영 별표2의2 3.나.의 “중계방송권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외에서 최근 거래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계방송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의 변화 추이, 시청자 규모를 감안한 광고·수신료 등 중계방송권의 예상 매출액, 중계시간대, 판매자의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및 재판매 계약체결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영 별표2의2 3.나.의 “구매자의 계약상 지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판매 조건”이란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녹화방송권(뉴스보도, 해설, 영상모음 등을 포함한다), 다른 방송매체용 방송권, 다른 상품 등을 구매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영 별표2의2 3.다.의 “구매자별로 가격 및 판매 조건을 차별적으로 제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의 예상 중계수입, 시청자 규모,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기술적 특성, 채널 또는 매체간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 영 별표2의2 3.라.의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자등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란 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권자등으로부터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6개월(동·하계 올림픽이나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의 경우에는 1년)전까지 상당 기간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중계방송권 판매를 위한 협상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영 별표2의2 3.마.의 “중계방송권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거나 중계방송권자 등의 계약상 지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구매 조건”은 중계방송권의 예상 매출액, 중계방송권을 판매하려는 자(이하“판매자”라 한다)의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및 재판매 계약 체결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 채널 또는 매체 간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법 제76조의3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이 중계방송권의 예상 매출액, 판매자의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및 재판매 계약체결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 채널 또는 매체간 차이 등에 비추어 판매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매자 측 내부의 파업 등 인력 수급상 문제 또는 주요 방송시설의 압류·손망실 등으로 구매자의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부도 등 구매자 측의 재정상 문제로 인해 판매자의 원활한 권리 행사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특정 구매자가 판매거절을 당하더라도 다른 중계방송권자등 또는 판매자로부터 동일 또는 대체 중계방송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5. 영 별표2의2 3.나. 또는 다.를 판매자가 위반한 경우
6. 영 별표2의2 3.마.를 구매자가 위반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중계방송권 거래가격·거래조건의 합리성, 공정성 등에 관한 판단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국민관심행사등의 자료화면 제공) ① 법 제7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계방송권자등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이하 “자료화면”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하며, 중계방송권자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행위로 본다.

1. 동·하계올림픽,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 : 개별 종목별 30초 이내에서 1일 최소 4분 이상
2.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 포함) 및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 : 1일 최소 2분 이상(단, 하루에 2개 이상의 경기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1일 최소 4분 이상)

② 중계방송권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화면을 제공함에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화면을 제공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계방송권자등이 자료화면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법 제76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료화면을 제공한 자의 중계방송권 권리표시를 해당화면 사용 시마다 연속하여 5초 이상 자막으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2. 중계방송권자등에 앞서 제공받은 자료화면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거나 뉴스보도나 해설 등의 정규로 편성된 뉴스프로그램 외의 목적으로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경우(단, 자료화면 제공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4호, 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중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은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은 '동·하계올림픽이나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3. 제5조제1항제1호의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는 '동·하계올림픽,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4. 제5조제1항제2호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은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 포함) 및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별표 1]

국민 전체 가구수 중 가시청 가구수의 계산기준(제2조 관련)

1. 국민 전체 가구수 및 지역별 가구수는 통계청이 조사한 가구수 통계(추계 포함)를 따른다.

2. 가시청 가구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단위별로 해당 지역 내의 방송수단별 가시청 가구수를 계산하여 합산하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에는 실시간 방송 가입 가구수만을 계산한다. 표본조사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가구분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가시청 가구수 계산 시 시청자와의 가입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수단의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 가구가 아닌 가입자 수를 제외하며, 2개 매체 이상의 방송수단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단수로 계산한다.

4. 제3호의 중복 가입 가구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 주관「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결과의 유료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 중복가입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와 관련한 가시청 가구수 산정의 기준시점은 입증자료 제출일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2016. 8.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 5호
개정 2020. 12.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13호
개정 2021. 12. 1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려할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하되, 법 제17조제1항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영 별표 2의 1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3항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영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1) 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에 영 별표 2의 2. 나. 1) 나)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 및 별표 2의 2. 나. 1) 라)에 따른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하되,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및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사업계획·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영 별표 2 2. 나. 1). 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제5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수신료매출액,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프로그램판매매출액,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등의 매출액을 말한다.

② 관련 매출액 산정시 위반기간은 금지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마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금지행위가 마친 날로 본다. 다만, 금지행위의 개시일, 마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위반행위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를 마친 날을 해당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③ 관련 매출액 산정시 관련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관련된 서비스
2. 다른 사업자의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있으나 이용자의 피해가 더 큰 경우는 이용자의 피해와 관련된 서비스

⑤ 관련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재산상황,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기타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거래상대방의 매출액·비용 및 그 밖에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별표 2의 2. 나. 1) 라)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까지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지행위와 관련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사업 중단,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사업자의 재산상황,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과거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 서비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5조의2(중대성의 정도) 영 별표 2 2. 나. 1). 마)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필수적 가중) ① 필수적 가중 금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하여 정한다.

② 위반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7조(추가적 가중·감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17조제2항의 고려할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감경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호, 2016.8.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3호, 2020.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4호, 2021.12.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대성의 정도 판단 세부기준(제5조의2 관련)

o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별표 2]

필수적 가중 금액(제6조제1항 관련)

Ⅰ. 금지행위 위반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Ⅱ. 금지행위 위반의 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1. 위반 사업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금지행위를 마친 날 기준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4회 과징금 부과 시 과거 위반행위 중 3회 위반행위부터 위반행위 1회당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제1호에 의해 가산되는 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3.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별표 3]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제7조 관련)

Ⅰ. 일반원칙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위반 사업자에게 다음 Ⅱ 및 Ⅲ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Ⅱ. 가중 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마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 사업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용자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4. 위반행위로 인하여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Ⅲ. 감경 사유 및 비율

1.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2. 위반행위가 과실(단, 중과실에 의한 경우 제외)에 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내지 50 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5. 위반 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14.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2012. 1. 13.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03호
개정 2014. 12. 3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26호
개정 2020. 12.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12호
개정 2021. 12. 1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1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 및 별표 5 Ⅲ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10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한다.

② 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영 별표 5 Ⅲ 1. 나. 1). 가)의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방송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에 영 별표 5 Ⅲ 1. 나. 1). 나)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 영 별표 5 Ⅲ 1.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별표 5 Ⅲ 1. 나. 1). 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제5조(관련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방송사업자등이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수신료매출액,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프로그램판매매출액,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등의 매출액을 말한다.

② 관련매출액 산정시 위반기간은 금지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마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금지행위가 마친 날로 본다. 다만, 금지행위의 개시일, 마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의 영업·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방송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방송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위반행위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방송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를 마친 날을 해당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③ 관련매출액 산정시 관련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2조의 방송 및 방송사업의 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방송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관련된 서비스
2. 다른 사업자의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있으나 시청자의 피해가 더 큰 경우는 시청자의 피해와 관련된 서비스

⑤ 관련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85조의2제4항, 제98조에 따른 재산상황,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기타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등 또는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거래상대방의 매출액・비용 등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별표 5 Ⅲ 1. 나. 1) 라)의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마친 날까지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지행위와 관련된 방송의 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사업 중단,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방송사업자등의 재산상황,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과거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다른 사업자 또는 시청자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서비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5조의2(중대성의 정도) 영 별표 5 Ⅲ 1. 나. 1). 마)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필수적 조정) ① 필수적 조정 금액은 위반 방송사업자등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하여 정한다.

② 위반 방송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을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7조(추가적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감경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가중·감경한 금액이 위반 방송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 방송사업자등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3호, 2012.1.13>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6호, 2014.12.31>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2호, 2020.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3호, 2021.12.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대성의 정도 판단 세부기준(제5조의2 관련)

o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별표 2]

필수적 조정 금액(제6조제1항 관련)

Ⅰ. 금지행위 위반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Ⅱ. 금지행위 위반의 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1. 위반 방송사업자등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금지행위를 마친 날 기준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4회 과징금부과 시 과거 위반행위 중 3회 위반행위부터 위반행위 1회당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제1호에 의해 가산되는 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3.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별표 3]

추가적 조정 금액(제7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위반 방송사업자등에게 다음 Ⅱ 및 Ⅲ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Ⅱ. 가중 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마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 방송사업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법 제85조의2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시청자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4. 위반행위로 인하여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Ⅲ. 감경 사유 및 비율

1.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2. 위반행위가 과실(단, 중과실에 의한 경우 제외)에 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내지 50 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5. 위반 방송사업자등이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2012.08.17.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49호
개정 2015.07.3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09호
개정 2018.12.18.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1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3 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은 5억원으로 한다.

제4조(필수적 조정) ① 필수적 조정 금액은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②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③ 제2항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5조(추가적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방송광고판매액의 증가 등 위반행위가 방송광고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가중·감경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49호, 2012.8.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9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7호, 2018.12.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필수적 조정 금액(제4조제1항 관련)

1. 위반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할 경우 1개월 마다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비고 : 위반기간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만약 위반행위의 개시일,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의 영업·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방송광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음).

가.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방송광고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를 종료한 날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가. 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4회부터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가중한다.

1)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100분의 20

2) 최근 3년간 4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100분의 40

3) 최근 3년간 5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100분의 50

나.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별표 2]

추가적 조정 금액(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추가적 조정 금액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2와 3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가중 사유 및 비율

가.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래상대방 또는 위법행위의 피해자 등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행위자의 방송광고판매액 등이 증가된 경우 등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3. 감경 사유 및 비율

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위반행위가 과실(단, 중과실에 의한 경우 제외)에 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내지 50 이내

라.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마. 광고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바.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사.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1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2020.12.2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1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영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또는 영 제30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2. 서비스 제공 방식
3.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 방식이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4.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5. 서비스 제공 상대방
6.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3의3] 2. 가.에 따라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금액은 제3조에 따른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
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
3. 보통 위반행위 : 1천분의 15

제6조(필수적 가중·감경) ① 영 [별표 3의3] 2. 나.에 따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최초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2회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1회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 3회 이상의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② 제1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추가적 가중·감경) 영 [별표 3의3] 2. 다.에 따라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0호, 2020. 12.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제4조 관련)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위반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합산 위반점수 = ∑(평가항목별 위반점수 × 비중)

합산 위반점수	중대성의 정도
24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5이상 24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0이상 15미만	보통 위반행위

2. 세부평가 기준표

위반점수 / 평가항목	비중	상(30점)	중(20점)	하(10점)
이득 발생의 정도	0.3	•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경우(상당한 이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	•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보통인 경우(보통의 이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경미한 이득 발생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의 정도	0.2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보통인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	0.2	•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할 목적이 명확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규모	0.2	• 불법촬영물등이 당해 조치의무사업자 이외 5개 이상의 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 유통된 경우	• 불법촬영물등이 당해 조치의무사업자 이외 1~4개의 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 유통된 경우	• 불법촬영물등이 당해 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 한정되어 유통된 경우
신고·삭제 요청등의 횟수	0.1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등이 3회 이상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등이 2회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등이 1회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피해'란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명예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별표 2]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제7조 관련)

Ⅰ.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치의무사업자 및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제1호 부터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Ⅱ. 감경사유 및 비율

1. 조치의무사업자가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5.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
6. 기타 제1호 부터 제5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17.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 2021. 12. 6.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1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조치의무사업자"란 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성능평가"란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하는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능평가기준"이란 성능평가 수행 시 적용하는 평가지표와 성능평가 통과기준을 말한다.
4. "성능평가 수행기관"이란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5. "특징정보"란 불법촬영물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신고·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목·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제4조(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마련)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전자문서, 전화, 전자메일, 인터넷 홈페이지·앱의 자체 신고 기능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앱의 자체 신고 기능을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용 창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2.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제7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성능평가 수행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적용 결과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라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사전 경고 조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로그기록의 보관)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①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
2. 성능평가 기준 마련
3. 성능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마련
4. 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신청 및 수행 현황
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3. 그 밖에 성능평가 수행기관 관리·감독에 필요한 자료

③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 마련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평가 기준) ① 성능평가 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별 가능성 :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로 인식하는 비율
2. 일관성 : 제1호의 반복 수행 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비율
3.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정한다.

제12조(정보제공 요청 등)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

2.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

3.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생성한 특징정보

2. 그 밖에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3조(운영·관리 실태의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2호, 2021. 12. 6.>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8.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 2022. 3. 1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2. "앱 마켓"이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앱 마켓서비스"란 부가통신역무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앱 마켓사업자"란 앱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란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3조(거래상의 지위)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2. 앱 마켓 시장의 상황
3.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4. 모바일콘텐츠 등의 특성

5. 모바일콘텐츠 등의 대안적 판매 경로의 존재 여부, 해당 앱 마켓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앱 마켓서비스에 따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제4조(강제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

제5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
2. 앱 마켓 시장,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 결제 시장 등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저해 우려

제3장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6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심사 지연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심사의 기준,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심사 지연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고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심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심사 지연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4장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제7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삭제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삭제의 구체적 사유를 삭제 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2호, 2022. 3.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2022. 5. 16.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영 제43조 [별표 4의2]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기간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로 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9호, 2022. 5.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